

이 땅의 장애인들이여 밖으로 나오라.

2006. 10. 26

국회의원 안 명 옥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 및 정보화를 통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 국가로서 GNP 2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압축 경제성장과 괄목상대할만한 국가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소외된 사회구성원들을 제대로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세계화 등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복지사각지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인구는 총 1,837,634명으로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활의료체계는 복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활병원 부족 등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 인프라가 부족하며, 재활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미흡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보장구의 수급체계도 문제가 큼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국가적 관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본 자료집은 장애인 실태를 살펴보고, 현 장애인 재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 관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장애인 보장구 문제와 재활의료서비스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집중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을 통해 이 땅의 장애인들과 예비 장애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며,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안 명 옥**

I.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
1. 재활의료서비스	3
2.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12
3. 국립재활원의 재활의료서비스	15
4. 재활의료서비스의 문제점	27
5. 미국의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29
6. 재활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4
II.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41
1.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43
2.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의 문제점	76
3. 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92
4.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00
III. 참 고 문 헌	105

이땅의 장애인들이여 밖으로 나아오라.

I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 재활의료서비스

가. 재활과 재활환자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 복지법」 제2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장애인 복지법」 제2조 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여 총 15개의 장애¹⁾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음.²⁾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재활’이란 장애인에게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인 재훈련을 포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각 개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기능회복을 하는 것임³⁾.
- ‘재활환자’라 함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겼거나 예상되는 사람으로 재활치료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기능향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령이 정한 자를 말함.⁴⁾

1) 15개의 장애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2) 「재활의료서비스 민간확대를 위한 민간보건자원 참여 활용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12., p3

3) 「재활의료서비스 민간확대를 위한 민간보건자원 참여 활용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12., p173

4) 「재활의료서비스 민간확대를 위한 민간보건자원 참여 활용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12., p239

나. 장애인 등록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등록 현황을 보면, 2006년 3월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총 1,837,634명이며 해마다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음.

□ 10년 전인 1997년도와 비교해볼 때 지체장애는 약 3.4배, 청각·언어장애는 4.4배, 시각장애는 무려 6.5배나 증가하였음. 또한 등록 장애유형도 1999년에 5종류에서 2006년 현재 15개 유형으로 3배가 확대되었음.

• • 장애유형별 연도별 등록 현황 • •

(단위 : 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3
계	425,064	527,250	697,513	958,196	1,134,177	1,294,254	1,454,215	1,610,994	1,777,400	1,837,634
지체장애	294,419	371,328	502,647	606,422	682,325	754,651	813,916	883,296	959,133	986,854
시각장애	27,211	34,548	46,957	90,997	115,911	135,704	152,857	170,107	167,570	177,073
청각,언어	43,875	52,501	67,890	87,387	105,711	123,823	139,325	155,382	188,172	194,056
정신지체	59,559	68,873	80,019	86,793	94,951	103,640	112,043	119,207	174,302	181,081
뇌병변장애				33,126	64,950	91,998	117,514	142,804	126,764	129,470
발달장애				1,514	2,516	4,014	5,717	7,740	9,466	9,955
정신장애				23,559	32,581	39,494	46,883	54,333	63,323	67,209
신장장애				23,427	28,118	32,094	34,884	38,175	41,579	42,684
심장장애				4,971	7,114	8,836	10,409	11,634	12,705	13,100
호흡기장애							7,039	9,768	11,635	12,148
간장애							3,108	4,072	5,126	5,459
안면장애							673	1,114	1,481	1,593
장루, 요루장애							6,585	8,182	9,520	9,848
간질장애							3,262	5,180	6,624	7,104

주)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6.7.

- 2006년 3월 기준,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인구 4,800만명의 3.8%에 해당됨.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등록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11.9%(2002년 14.11%, 2003년 12.36%, 2004년 10.78%, 2005년 10.33%)로 매년 전년대비 10%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해왔음. 통계청의 「장애인구 특별 추계」⁵⁾에 따르면 2030년 총인구 수 대비 장애인수는 1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재활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다. 등록 장애인의 특성 분석

- 2005년 12월까지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777,400명임. 전체 15종류의 장애 유형 중 상위 5위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 순임.
- 남자가 1,131,600명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는 645,800명으로 36.3%를 차지하고 있음.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 등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높게 나타나는 장애유형임.
- 남자는 여자보다 발달장애와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언어장애가 높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정신장애, 신장장애, 청각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 장애인구추계, 통계청, 2005.1

• •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 현황 • •

(2005. 12월 현재, 단위: 명, (%))

구분	계	남	여
계	1,777,400	1,131,600 (63.7)	645,800 (36.3)
지체	959,133	632,758 (66.0)	326,375 (34.0)
뇌병변	167,570	99,883 (59.6)	67,687 (40.4)
시각	188,172	119,514 (63.5)	68,658 (36.5)
청각	159,380	92,777 (58.2)	66,603 (41.8)
언어	14,922	10,805 (72.4)	4,117 (27.6)
정신지체	126,764	77,750 (61.3)	49,014 (38.7)
발달	9,466	7,813 (82.5)	1,653 (17.5)
정신	63,323	35,265 (55.7)	28,058 (44.3)
신장	41,579	23,295 (56.0)	18,284 (44.0)
심장	12,705	7,819 (61.5)	4,886 (38.5)
호흡기	11,635	9,234 (79.4)	2,401 (20.6)
간	5,126	3,986 (77.8)	1,140 (22.2)
안면	1,481	879 (59.4)	602 (40.6)
장루,요루	9,520	6,067 (63.7)	3,453 (36.3)
간질	6,624	3,755 (56.7)	2,869 (43.3)

자료: 「성별 등록현황 및 비율」, 보건복지부, 2006.7.

□ 2005년 12월말 기준, 전국 주요 시·도별 장애인 등록 현황 중 상위 5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시·도별 상위 5위 장애유형비율 ● ●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서울	지체(51.8)	시각(10.9)	뇌병변(10.1)	청각(9)	정신지체(6.5)
부산	지체(53.4)	시각(11.1)	뇌병변(10.8)	청각(7.1)	정신지체(4.7)
대구	지체(53.1)	시각(11)	뇌병변(10.5)	청각(8.1)	정신지체(7)
인천	지체(56.9)	시각(10.3)	청각(8.9)	뇌병변(8.4)	정신지체(6.1)
광주	지체(51.5)	시각(11.6)	청각(10.8)	뇌병변(8.9)	정신지체(7.3)
대전	지체(54.1)	시각(10.4)	뇌병변(10.3)	청각(8.5)	정신지체(6.7)
울산	지체(53.5)	청각(11.3)	시각(10.1)	뇌병변(8.9)	정신지체(6.8)
경기	지체(54.9)	시각(10.4)	뇌병변(9.5)	청각(9.5)	정신지체(6.8)
강원	지체(56.5)	시각(9.5)	청각(9.1)	뇌병변(8.9)	정신지체(7.1)
충북	지체(53)	시각(9.8)	정신지체(9.6)	청각(9.5)	뇌병변(8.9)
충남	지체(53.7)	시각(10.5)	청각(9.1)	정신지체(8.5)	뇌병변(8.3)
전북	지체(55)	시각(10)	뇌병변(9.2)	청각(8.9)	정신지체(7.9)
전남	지체(53.7)	시각(11.3)	청각(11.2)	뇌병변(7.5)	정신지체(7.2)
경북	지체(52.5)	시각(10.7)	뇌병변(9.6)	청각(9.3)	정신지체(8.4)
경남	지체(56.1)	시각(9.8)	뇌병변(8.7)	청각(8.2)	정신지체(7.2)
제주	지체(48.4)	시각(13.5)	뇌병변(9.9)	청각(8.7)	정신지체(8.3)

자료: 「시·도별 상위 5위 장애유형비율, 보건복지부, 2006.8.

□ 위의 시·도별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자들이 겪고 있는 주요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 순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장애유형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 대부분의 지역이 1위 지체장애 2위 시각장애를 차지하고 있으나 3위부터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충북, 충남을 포함하는 충청도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정신지체가 많으며 전북, 전남을 포함한 전라도 지역에는 청각장애가 많음. 한편 울산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청각장애의 비율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는 뇌병변장애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 시·도 지역별로 등록 장애인이 전국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19.2%), 서울(16.7%) 경남이(7.1%),부산(7%),경북(6.7%)순임. 반면, 장애인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0.5%), 울산(1.9%)순임.

- 또한 시·도 지역별로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순위가 높은 지역은 전남(5.4%), 전북(5.3%), 강원(4.8%), 충남(4.6%) 순이었으며, 순위가 낮은 지역에는 제주도(1.8%), 서울(2.8%), 울산(3.1) 및 경기도(3.1%)가 해당됨.

● ● 시·도별 장애인 비중 ● ●

(2005년 12월 현재, 단위: %)

구분	전국 장애인 대비 비중	지역 인구대비 비중
서울	16.7	2.8
부산	7.0	3.4
대구	4.8	3.3
인천	5.2	3.5
광주	2.7	3.4
대전	2.8	3.4
울산	1.9	3.1
경기	19.2	3.1
강원	4.9	4.8
충북	3.7	4.4
충남	5.2	4.6
전북	5.6	5.3
전남	6.0	5.4
경북	6.7	4.4
경남	7.1	4
제주	0.5	1.8
계	100	

자료: 「시·도별 인구수 대비 비율 통계」, 보건복지부, 2006.8.

- 등록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재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활의료서비스가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에 지역적 균형을 위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 • 연령별 장애등록 현황 • •

(2005년 4월말 현재, 단위: 명)

구분		0~10세	11~17세	18~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소 계
선천성	유전성	976	1,046	463	1,858	2,056	2,076	1,180	874	460	10,989
	약물중독	25	38	15	98	101	66	32	25	18	418
	출산시의료사고	221	209	99	333	312	197	83	51	18	1,523
	원인모름	6,257	6,258	2,648	10,712	10,682	9,952	5,208	3,651	1,533	56,901
	기타	6,064	5,486	2,330	9,941	11,368	11,094	6,245	4,142	1,772	58,442
소 계		13,543	13,037	5,555	22,942	24,519	23,385	12,748	8,743	3,801	128,273
후천성	질병	2,872	4,019	2,180	17,895	48,710	92,628	100,635	125,835	72,573	467,347
	퇴행성장애	69	77	69	509	1,432	3,840	8,000	18,782	16,927	49,705
	영양부족	2	9	2	23	60	92	81	73	57	399
	교통사고	266	709	797	10,230	18,968	29,363	22,490	17,393	6,327	106,543
	산업재해	5	6	31	2,395	13,819	27,715	19,045	11,379	1,932	76,327
	전상	8	12	12	163	316	542	1,484	1,318	1,171	5,026
	기타사고	682	1,098	1,012	13,447	33,277	57,173	48,717	45,970	21,979	223,355
	음향의상성난청	35	48	29	158	326	555	660	1,040	1,265	4,116
	미상	4,689	5,632	2,562	13,127	23,728	33,489	28,999	30,961	20,180	163,367
소 계		8,628	11,610	6,694	57,947	140,636	245,397	230,111	252,751	142,411	1,096,185
분류 중		14,066	12,305	5,859	33,206	62,383	96,116	92,232	103,202	63,206	482,575
총 계		36,237	36,952	18,108	114,095	227,538	364,898	335,091	364,696	209,418	1,707,033

자료: 보건복지부, 2006.9.

□ 2005년 4월 현재 연령별, 장애원인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등록 장애인 전체 1,707,033명중 13세미만은 2.15%, 11~ 17세는 2.16%, 18~20세는 1%, 21~30세는 6.6%, 31~40세는 13.3% 41~50세는 21.3%, 51~60세는 19.6%, 61~70세는 21.3% 71세 이상은 12.2%임.

□ 연령별 분포에서 51세 이상의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어서 53.1%를 차지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장애의 연령이 고령화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반면 20세 이하의 장애인 비율은 5.3%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장애는 후천적 장애가 64.25%, 선천적 장애가 3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원인별로 보면 질병에 의한 장애가 가장 많으며 교통사고 등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가. 재활의료기관의 현황

- ‘재활의료기관’ 이라 함은 재활장애를 가진 재활환자들의 재활 회복을 위한 치료기관임.
-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전국의 재활 의료기관은 27,114개, 병상은 267,670개 임. 재활의학과 전문의 배치기관 현황을 볼 때 의원이 53.8%로 가장 많음.

● ● 재활의학과 개설현황 ● ●

(2006. 7월말 현재, 단위: 개소, %)

계	의료기관		병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배치기관		재활의학과 개설비율	
	기관수	구성비	병상수	구성비	기관수	구성비	기관수	구성비
종합전문요양기관	43	0.2	35,928	13.4	40	6.3	41	1.3
종합병원	252	0.9	85,114	31.8	113	17.8	123	3.9
병원	933	3.4	123,315	46.1	69	0.9	166	5.3
요양병원	287	1.1	23,313	8.7	71	11.2	146	4.6
의원	25,599	94.4	-	-	341	53.8	2,674	84.9
합 계	27,114	100.0	267,670	100.0	634	100.0	3,15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06.9.

나. 재활 의료기관 분포

- 시·도별 재활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전문병원은 전국에 총23개가 있으며 전체 병상 수는 4,003개임.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각 4개, 5개로 가장 많으며 부산,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6개 지역에는 재활전문병원이 하나도 없음. 2006년 7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 1,837,634명 중 재활전문병원이 없는 6개 지역의 등록 장애인은 470,483명(25.6%)으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
- 한편 장애인 10만명당 재활병상수를 살펴보면 전체 17개 시·도에서 재활병원이 없는 지역 6곳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병상 수를 가진 지역은 대전(866.3병상)이며 다음으로 인천(788.1병상)과 울산(765.8병상) 순임.
- 장애인 10만명당 재활전문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88.6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85.1명), 제주(61.2명) 순임.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6명)이며 다음으로 경북(23.7명), 경남(28.2명) 순임.
- 지역인구수 대비 장애인수를 비교해 보면, 전남이 가장 높지만, 재활인프라 측면에서는 가장 열악한 실정임.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재활의료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14 이땅의 장애인들이여 밖으로 나오라.

● ● 시 · 도별 재활의료 현황 ● ●

(2006.7월말 현재, 단위:개)

시도별	병원수 (개소)	병상수 (병상)	재활 전문·의수 (명)	장애인수 (명)	장애인 10만명 당 재활병원수 (개소)	장애인 10만명 당 재활병상수 (병상)	장애인 10만명당 재활전문·의수 (명)
서 울	4	490	259	304,202	1.3	161.1	85.1
부 산	-	-	49	129,209	-	-	37.9
대 구	2	100	26	87,169	2.3	114.7	29.8
인 천	1	758	36	96,182	1.0	788.1	37.4
광 주	-	-	29	50,040	-	-	58.0
대 전	1	450	46	51,948	1.9	866.3	88.6
울 산	1	275	12	35,908	2.8	765.8	33.4
경 기	5	711	164	352,298	1.4	201.8	46.6
강 원	1	60	30	74,960	1.3	80.0	40.0
충 북	-	-	28	69,023	-	-	40.6
충 남	-	-	36	95,546	-	-	37.7
전 북	-	-	35	103,777	-	-	33.7
전 남	1	294	14	110,964	0.9	265.0	12.6
경 북	5	426	29	122,202	4.1	348.6	23.7
경 남	2	439	37	131,318	1.5	334.3	28.2
제 주	-	-	14	22,888	-		61.2
합 계	23	4,003	844	1,837,634	1.3	217.8	45.9

자료: 보건복지부, 2006.9.

3. 국립재활원의 재활의료서비스

가. 병원진료비 및 입원진료 현황

- 우리나라 재활의 대표적인 중추기관인 국립재활원의 재활의료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립재활원의 병원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이용하는 입원, 외래 환자는 총 10,000여명임. 2005년 12월31일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19개 종류의 진료 유형이 있으며 40가지의 검사 및 사업 실적들이 모두 계획한 예상실적을 넘어서고 있음. FES 뇌손상 치료의 경우, 6,000건을 예상하였으나 14,953건으로 계획대비 249.2%를 기록하였고 운동분석 검사의 경우, 2004년도 20건이었으나 2005년 51건으로 255%를 기록하고 있음.
- 본 진료 현황을 통해 재활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계획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이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음.

● ● 병원진료현황 ● ●

(단위 : 건,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월 31일 현재		
				계 획	실 적	비율(%)
입원	52,912	52,600	54,785	60,000	65,918	109.9
외래	35,336	37,528	36,506	36,000	41,449	115.1
검사						
-임상병리검사	136,535	115,499	116,712	105,000	131,196	124.9
-방사선검사	8,547	8,208	9,252	8,230	10,407	126.4
-임상심리검사	1,650	1,777	1,983	2,000	2,414	120.7
-심폐기능검사	973	954	1,018	900	1,219	135.4
-요류동태검사	163	213	238	150	297	198.0
-근전도검사	1,408	716	506	500	526	105.2
-운동분석검사	111	13	20	20	51	255
사회사업						
-사회사업검사	2,157	1,707	1,452	1,500	1,657	110.4
물리치료						
-운동치료	75,072	71,366	73,423	78,300	88,259	112.7
-전기치료	29,602	23,663	29,641	23,000	36,714	159.6
-수치료	405	1,066	887	800	622	77.7
-소아치료	5,091	6,352	6,362	5,200	6,987	134.3
운동부하	2,703	3,414	3,911	3,600	6,030	167.5
작업치료						
-성인	38,030	40,403	47,241	62,900	79,533	126.4
-소아	2,296	3,180	3,915	5,200	6,065	116.6
FES						
-뇌손상	10,125	10,713	10,774	6,000	14,953	249.2
-뇌졸중	-	-	-	6,000	16,271	271.1
-척수손상	6,217	6,343	7,573	6,000	10,728	178.8
언어치료	7,065	6,601	5,655	5,800	5,131	88.4
행동수정	3,273	3,015	2,689	2,700	2,469	91.4
방광종합검진 클리닉	144	146	145	130	165	126.9
통증클리닉	25	2,606	2,697	2,500	2,482	99.2
연하장애클리닉	101	94	108	80	194	242.5
욕창클리닉	-	4,507	3,475	3,000	4,623	154.1
앉은자세클리닉	-	10	37	30	39	130.0

(계속)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월 31일 현재		
				계 획	실 적	비율(%)
성재활사업						
- 교육	1,083	1,042	1,274	850	1,021	120.1
- 상담	1,310	1,319	1,326	1,000	1,275	127.5
전문재활간호						
- 자조관리	-	14	44	45	48	106.6
- 입원환자 교육	4,192	4,353	3,454	4,200	5,002	119.0
- 아침체조 프로그램	-	12,611	31,341	30,000	31,880	106.3
- 연하관리 교육	-	680	2,288	12,000	15,486	129.0
퇴원환자 사후관리						
- 가정방문	60	60	59	60	60	100
- 전화상담	805	1,478	1,865	2,000	2,388	119.4
- 우편상담	355	250	175	150	204	136.0
주간재활센터						
-치료인원	3,499	3,837	3,403	3,400	3,489	102.6
-사회적응훈련	12	12	11	12	12	100
장애인 치과진료						
-진료인원	2,805	2,728	2,904	2,600	2,529	97.2
-처치건수	6,562	5,665	7,938	5,500	5,569	101.2
-보철	66	80	91	60	65	108.3
보장구						
-보장구제작	1,200	1,118	1,236	1,200	1,304	108.6
-보조기 클리닉	23	25	22	20	21	105.0

자료: 「병원진료현황」, 국립재활원, 2006.8.

□ 연도별 입원진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61일임.

□ 건강보험에서 입원일수가 2달이 초과하는 경우 인정하는 입원수가를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활병원은 환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기 보다는 열악한 수익구조 보호를 위해 입원기간을 최대 2달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환자의 경우,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음.

• • 연도별 입원진료 현황 • •

(단위 : 명,일,%)

구 분 연 도	입원	퇴원	입 원 연인원	외래	1일 평균 재원자수	1인평균 재원일수	병상 이용율
2002	999	1,005	52,912	35,336	145	53	96.6
2003	957	953	53,347	37,528	146	56	97.4
2004	1,001	984	54,785	36,506	149	55	98.0
2005.12.31	1,098	1,066	65,918	41,449	181	61	97.3

자료: 「병원진료현황」, 국립재활원, 2006.8.

□ 2005년 퇴원환자는 총 1,066명이며 이중 재입원 환자는 216명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음. 장기 입원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최대 2달의 재원일수를 초과하면 다른 병원을 들러 재 입원하는 관례를 나타내는 수치일 가능성이 있음.

• • 퇴원환자 중 재입원 환자 현황 • •

(단위 : 명/ %)

구 분	총퇴원환자	재입원환자	재입원비율	비 고
2002	1,005	196	19.5	
2003	953	206	21.6	
2004	984	209	21.2	
2005.12.31	1,066	216	20.3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나. 퇴원환자 입원실적 및 입원대기시간

- 연도별 퇴원환자들의 재활원 입원력을 살펴보면 2005년 1,066명중 1회가 850명, 2회가 109명, 3회가 42명 4회가 31명, 5회 이상이 34명임.
- 이것은 많은 장애 환자들이 장기간의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 연도별 퇴원환자 당원 입원력 • •

(단위 : 명)

연도별 \ 구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2002	1,005	809	96	48	22	30
2003	953	747	110	44	24	28
2004	984	775	120	41	22	26
2005	1,066	850	109	42	31	34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 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의 경우, 귀가가 657명 타병원 이송이 387명, 주간재활센터가 9명, 재활훈련연계가 13명으로 재택치료가 아닌 타병원이송이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음. 이것은 많은 환자들이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 연도별 퇴원환자 형태별 현황 • •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귀가	타병원 이송	강퇴	주간재 활센터	재활훈련 연계	기타 (요양원 등)
2002	1,005	631	348	1	-	20	5
2003	953	531	380	1	-	38	3
2004	984	587	368	1	-	6	22
2005.12.31	1,066	657	387	-	9	13	-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 퇴원환자 평균 입원대기 기간을 살펴보면 2002년도 107일 2003년도 65일 2004년도 92일 2005년도 83일로 평균 3달을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장애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고 치료는 더욱 힘들어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재활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이에 대한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 퇴원환자 평균 입원대기 기간 • •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계		일반입원		방광검진입원		건강검진입원		재입원 (방광검진제외)	
	환자수	평균대기 기 간	환자수	평균대기 기 간	환자수	평균대기 기 간	환자수	평균대기 기 간	환자수	평균대기 기 간
2002	1,001	107	816	41	145	115	4	23	36	248
2003	951	65	752	43	145	152	1	11	53	54
2004	984	92	812	46	148	163	1	103	23	59
2005	1,065	83	867	34	163	146	폐지		35	69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 퇴원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해마다 고른 증가 추세를 보이나 특별히 2005년도 1,066명중 50세 미만이 501명이고 50세 이상이 570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연령 또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임.
- 고령의 장애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층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퇴원환자 1,066명중 등록 장애인수는 595명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음. 이것은 재활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모두 등록 장애인이 아님을 의미하며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함.

● ● 퇴원환자 중 등록 장애인 현황 ● ●

(단위 : 명.%)

연도별 \ 구 분	총 퇴원환자수	등록장애인수	비 율	비 고
2002	1,005	581	57.8	
2003	953	614	64.4	
2004	984	621	63.1	
2005.12.31	1,066	595	55.8	

자료: 국립재활원, 2006.6.

다. 재활 훈련 및 진료 실적 현황

- 재활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상담 및 평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자의 재활의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
이 요구됨.
- 장애에 대한 부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부담이며 모두
가 연대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이 2002년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최근까지 장애인을 유기하고 방임하고 있는 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
는 것을 볼 때 장애인 가족교육은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하며 이것
은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음.

• • 재활훈련 • •

(단위 :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월 31일 현재	비 고
				목표 실적 달성율	
사회재활훈련					
- 자립생활훈련과정	105	132	134	120 141	117.5
- 자립생활훈련 심화과정	9	12	7	10 12	120
- 재활훈련 단기체험과정	246	232	191	180 235	130.5
- 자동차 운전기능과정	240	238	206	240 239	99.6
사회재활 활성화					
- 운전기능강사과정	6	-	-	- -	-
- 장애인가족교육	216	120	40	30 54	180
- 자립생활지도자 연수		12	21	10 10	100
- 재활상담 · 평가	818	1,164	1,285	1,000 1,414	141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 최근 4년간 자립생활 훈련현황을 보면, 여성 장애인의 재활훈련자는 124명으로 남성 장애인 428명에 비해 참여율이 낮았음.

□ 한편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자립생활과정 훈련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15개의 장애유형 중 지체 및 뇌 병변에 치우쳐져 있음. 국립재활원이 현재 장애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활의 선도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자립 재활훈련의 문제점이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음.

• • 자립생활과정 훈련현황 • •

(단위 : 명)

구분 연도	성 별			장 애 별				등 급 별				
	계	남	여	계	지체	뇌병변	기타	계	1급	2급	3급	4급
계	552	428	124	552	284	254	14	552	367	133	50	2
2002	114	97	17	114	61	53	-	114	65	39	10	-
2003	144	113	31	144	80	64	-	144	105	32	6	1
2004	141	103	38	141	74	53	14	141	100	25	15	1
2005	153	115	38	153	69	84		153	97	37	19	
구분 연도	연 령 별					학 력 별						
	계	14 ~ 19	20 ~ 29	30 ~ 39	40 이상	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계	552	17	147	141	247	552	17	61	80	293	101	
2002	114	1	21	26	66	114	4	5	20	60	25	
2003	144	6	42	29	67	144	2	16	22	73	31	
2004	141	3	41	37	60	141	8	21	17	74	21	
2005	153	7	43	49	54	153	3	19	21	86	24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 국립재활원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여러 복지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의 성 재활과 관련해서는 2002년 46명 이후 상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등 기타 다른 장애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현황 • •

(단위: 건,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월 31일 현재			비 고
				목표	실적	달성율	
계	407	599	793	900	1,036	115	
○ 생활지도요원반							
- 지체장애인시설		53		50	39	78	
- 정신지체시설	54	193	224	210	297	141	
- 요양시설		132	156	180	118	66	
- 시각·청각시설			30			-	
○ 의료요원반							
- 치료사	48		58			-	
- 간호사		50		50	50	100	
○ 상담요원반							
- 성재활	46						
○ 관리자반				50	98	196	
○ 시설장반	43					-	
○ 응용행동분석반				50	124	148	
○ 직업재활기금사업반	160						
○ 지역사회재활반	56						
○ 성재활반							
- 정신지체		64	72	60	63	105	
- 지역사회재활		39	35	50	44	88	
○ 직업재활반			170	140	163	116	
○ 재가복지요원반		68	48	60	40	67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과 교육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함.

• • 연도별 퇴원환자 거주지역별 분포도 • •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1,005	485	13	27	5	5	4	13	241	31	26	28	33	50	26	13	5
2003	953	450	12	32	4	9	8	7	235	25	13	33	21	36	42	19	7
2004	984	485	9	33	10	15	4	6	214	29	21	35	29	39	25	25	5
2005.12.31	1,066	512	11	41	16	10	3	9	241	37	19	36	30	39	30	27	5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 우리나라 전문재활병원은 전국에 4곳임. 주요 재활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국립재활원 50,000원, 국립의료원 109,070원 삼육재활병원 50,000원, 서울대 병원 235,000원, 연세대 재활병원 187,000원, 서울삼성병원 310,000원임. 국립재활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국립의료원은 2배, 연세대 재활병원은 3배, 서울대병원은 4배, 서울삼성병원은 5배를 기록하고 있음.

□ 식대의 경우도 국립재활원의 13,500원에 비해 서울삼성병원은 24,000원으로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수가 영세한 장애인 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재활치료를 위한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국립재활원과 타병원과의 진료비 비교 • •

(단위 : 원, 2005.12.31)

구분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	삼육재활 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재활병원	서울삼성 병원
병실료 (상급병실사 용료-1인실)	50,000	109,070	50,000	235,000	187,000	310,000
(6인실)	23,950	27,110	23,950	27,110	27,110	27,110
식 대 (1일)	13,500	15,570	15,900	21,600	19,500	24,000
언어치료	13,650	안함	25,000	30,000	33,000	28,000

자료: 국립재활원, 2006.2.

4. 재활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 재활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 우리나라 재활의료서비스는 지역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전국적으로 재활전문병원이 4개밖에 없어 기존의 병원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입원신청 시 최소 2달에서 3달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
 - 장애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장애증상이 악화되어 장애인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한편 장애인 수 대비 재활병원 및 병상수의 비교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에 제대로 된 재활의료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 일률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는 치료를 위해서 장애인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 이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나. 재활의료서비스의 인프라 부족

- 현재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재활의료서비스 현황에서 지적되었듯이 국민 1인당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활전문의를 포함한 재활의료서비스는 다른 의료분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수요에 대비 공급부족으로 재활환자들은 장애를 안고 지내야 하며, 건강보험제도 하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상 한 병원에서 2달 이상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애인들은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불편함에 대해서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됨.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결국 장애 환자들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고 치료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 재활 인프라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재원일수가 긴 재활 환자의 특성상 병상 회전율이 낮고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에서 재활전문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임.

다.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훈련 및 교육 서비스 부족

- 장애인을 위한 병원별 재활훈련들은 특정 장애분야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타 장애 13가지(시각장애, 청각장애등)에 대한 재활훈련시설은 극히 미비하며 교육훈련 또한 저조한 한 실정임.
- 생애주기별로 보면, 재활은 근본적으로 사회복귀와 연결되어 있지만, 재활 훈련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20~30대에 있어서는 성 재활 훈련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재활훈련 및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즉, 대상자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차별적인 재활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5. 미국의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⁶⁾

가. 미국의 재활의료서비스

- 의료재활은 영어로 ‘medical rehabilitation’이라 하며 의학, 의술에 의한 재활의 개입을 의미하고 의학적 재활, 재활의료 등을 의미함.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의료재활 개념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 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능력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며, 내·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물리적, 심리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 조치로 정의하고 있음.
- 의료재활이란 단지 치료를 위한 의학적인 간호조치만이 아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보장구의 처치와 훈련, 의료사회 사업가에 의한 원조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의료재활의 목적은 일상생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였을 때 이를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측면에서까지 환자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려줌으로써 좀 더 즐겁고 보람되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에 있음.
-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산하 국립 아동보건 및 인간발달 연구소(NICH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 Human Development) 내의 국립의료재활연구센터(NCMRR: National Center for

6)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2005.6 p294

Medical Rehabilitation Research)가 의료재활과 관련된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 및 지원하고 있음.

- 국립의료재활연구센터는 연구, 연구 수행 및 지원, 보건정보 제공, 기타 질병이나 신경, 근골격, 심혈관, 폐, 기타 생리적 시스템의 부조화로 인한 신체장애인의 재활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지원하고 있음.

● ● 장애시기에 따른 다양한 재활서비스 기관 ● ●

시기	유형	선진외국의 재활서비스기관
급성	입원서비스	종합병원재활의학과
아급성		재활병원
급성 및 아급성		특수재활센터
아급성 및 만성	중간단계서비스	재활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사회서비스	낮병원
		외래재활치료
		가정건강서비스
		가정보조

자료: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6, p297)에서 재인용

나. 미국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 대학병원 등과 같은 3차 기관에 소속된 재활의학과에 해당됨.
-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소아과, 안과 등 타과 전문의의 직접 치료 후 종합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됨.

□ 재활병원

- 독립된 재활병원들은 급성기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적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는 아님.
- 계속적으로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기능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특수재활센터

- 장애 특성에 따른 치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화된 치료 시스템을 가진 기관으로 유럽과 미국의 척수손상센터나 호주의 외상성 뇌손상센터 등이 이에 해당됨.
- 수술에서부터 급성기 재활치료와 아급성기의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24시간 의료적 관리를 필요로 함.
- 초기 치료부터 가정이나 직업으로 복귀까지 장애특수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재활서비스 중 가장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재활요양병원

시기적으로 아급성기 혹은 만성기 재활치료에 해당되지만 아직 의학적 안전성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숙련된 재활간호사에

의해 24시간 간호를 필요로 하고 일주일에 1~2회의 재활의학과 의사의 개입과 2~3회의 일반의사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임.

□ 요양원

- 시기적으로는 만성기 재활치료에 해당되며 주로 재활간호사에 의해 24시간 간호를 받으며 일주일에 1회 정도의 일반의사의 개입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임.
- 치료적 내용은 합병증과 장애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며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통해 이루어진 기능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순한 재활치료를 제공함. 따라서 다 영역의 팀 접근은 거의 필요치 않음.

□ 사회복지재활시설

- 재활치료를 통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할 정도로 기능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사회적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임.
- 의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의료적 관리가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임.

□ 낮 병원

- 의학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저녁에는 의학적 개입이나 관리없이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혹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 통원이 가능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임.
- 기능적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중심이 된 다영역의 팀 접근에 의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게 됨.

□ 외래재활치료

- 의학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의사나 간호사에 의한 개입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혹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 통언이 가능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임.
- 치료적 내용은 개인의 장애상태에 따라 주 1회서부터 여러 회까지 다양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며 약 1개월 간격으로 재활의학과 의사에 의해서 기능향상에 대한 평가를 받음.

6. 재활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가. 정부의 재활의료서비스 구축 계획 실천

- 재활전문병원의 권역별로 신설하여 경기(인천포함), 강원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재활센터(50병상)와 강원재활병원(50병상)을 증축 추진 중에 있음.
- 2007년도 제주도 재활병원 150병상을 증축하고, 2008년 이후에는 호남, 영남, 충청권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전문병원 신축할 예정임.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5까지	50	인천재활센터 신축비 : 5,000백만원
2006	270	재활센터(인천,강원_)증축비 : 27,000백만원×2개소×50%
2007	135	제주증축 : 27,000백만원×1개소×50%
2008	643	재활센터 신축(신규) : 50,747백만원×1개소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2개소)등 13,600백만원
2009	879	재활센터 건축비(2개소) : 87,941백만원
2010	-	

- 목적, 시설, 장비, 인력, 예산조달방법, 서비스제공내용,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종합대책」에 반영된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6개 권역에 장애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전문화 추진 및 지방거주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예산조달방법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재활병원의 목적, 시설 및 장비기준, 인력기준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용역명 : 「재활의료서비스 민간확대를 위한 민간보건자원 참여 활용화 방안」 >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중임.
- 광역별 공공재활병원 설립 및 민간 생활의료기관의 활성화는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근본원인은 정책당국의 재활의료현실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책적인 결단의 부족 때문임.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광역별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아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공공 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재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나. 특성화된 재활전문 병원

-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병상 수 늘이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재활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재활전문병원이 필요함.
-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로 재활서비스를 전문화하여 장애 특성에 따른 치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뇌 병변 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

센터, 소아장애재활센터, 절단재활센터, 치매재활센터, 저시력 센터 등의 전문화된 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인하⁷⁾

- 재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에서 의료비가 가장 많았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 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의 의료비 자기부담금 지원은 다른 의료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비교적 쉽게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면, 6세 이하의 소아 아동 입원 시 자기부담금 면제 조치와 개두술, 심장수술의 경우 최초 30일간 본인부담 10% 감면, 암환자 등록 시 향후 5년간 본인 부담금 감면조치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

7) 대한재활의학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6

• • 기존에 진료비를 감면 받고 있는 경우들 • •

기준	내 용
본인일부 부담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50%에서 30%)	*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한센병환자 / 파킨슨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후 이에 관련된 치료 시
6세미만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 담금 면제 대상 적용	* 6세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기준 개정 1항목 *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개정 1항목 * 지속적 국소뇌혈류량 측정의 인정기준 등 신설 2항목 *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기준 개정 1항목 * 무이증, 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인정기준 신설 1항목
외래 본인 부담율 (30%)	장애인 1~2급, 정신질환자(자신,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정특례 제외), 1종 전염병, 상이등급 1~3급, 고엽제 후유의증, 나병, 장기이식,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 암등록 환자 * 심장 질환 및 뇌혈관 질환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개심술 및 개두술 수술한 경우로써 입원기간 최대 30일 *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 * CT, MRI는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자료: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대한재활의학회, 2006

라. 재활의료수가의 현실화

- 민간 차원의 질 좋은 재활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의식 전환이 중요함. 종합전문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에서 퇴원한 많은 아급성 장애인들이 적절한 재활훈련을 통해 기능적인 회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장애의 중등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수익구조가 열악해 민간에서 참여를 꺼리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공공의료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동시에 민간 차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책이 필요함.

마. 민간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3년도 병영경영분석’ 결과, 재활의료기관은 의료 수익이 적자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평균 -10.5%에서 -35.1%).
- 따라서 일정비율이상의 재활 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료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재활병원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재활의료시설(병원 포함)의 시설, 인력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하여 차등화된 재활의료수가의 자료로 적용하고 있음.

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

- 장애인, 특히 노인성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의 저하로 지역중심의 재활사업이 필수적임. 아직은 종합적인 광역단위재활병원이 없으므로 기존의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 전문재활병원, 요양병원과 그리고 전국의 보건소 등이 상호 정보교류, 역할분담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그리고 의료재활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함.
- 또한 보건소, 종합복지관 이용자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운영 합리화를 추진하고, 공공시설 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업무의욕 촉진을 위한 재교육, 성취도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평가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임.

사. 재활의료시설 접근의 편의성 개선

- 재활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기존의 재활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관,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는 저상 버스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외국과 같이 노인 장애인이 콜택시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저금리 융자 등의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

아. 국립재활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 활성화

-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급증, 각종 사고로 인한 후천성장애의 증가와 선천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함.
- 장애인 재활연구는 예방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에서부터 실수요자인 재활환자를 통한 진단 및 치료 기술 연구, 그리고 이를 제품화·상품화하는 산업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교육부 산하의 국립장애재활연구소, 국립보건원에 국립재활의학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1986년 국립재활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자. 과학적인 재활치료기술 이용을 위한 정부의 감독 강화

-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유사 의료행위가 많아 실제로 노년층의 환자들이 얼마나 치료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임.
- 미국의 경우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서로 비슷한 치료나 약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을 개발하여 공고함으로서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의 판단을 돕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애인(특히 노인성 질환)에 대해 재활의료기관마다 다른 치료법과 평가법을 사용하고 있음.

이땅의 장애인들이여 밖으로 나오라.

Ⅱ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가. 재활보조기구

□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정의하고 있음.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함.

□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하여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음.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함.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장애인 보장구의 분류체계

□ 장애인 보장구의 분류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① 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 목발 및 흰자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2.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1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한다.
2.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3.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장구에 관한 보험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5. 뇌병변장애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 2003년 10월에 용역을 주어 2005년 4월에 고시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 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 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 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 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 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 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46 이땅의 장애인들이여 밖으로 나아오라.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 의지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 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 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다리 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 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 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 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 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 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 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 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 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 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 의지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팔보 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 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 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 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 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 하는 경우 사용		90,000	3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척추 보조 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 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 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70,000	3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 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 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 된 보조기		380,000	3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척추 보조 기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골반 보조 기	골반보조기 (pelvie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다리 보조 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 보조 기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 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 부하용 보조기		370,000	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 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
기타 보장 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목발(crutches)			15,000	2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 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plastic eye)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 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 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 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기타 보장 구	전동스쿠터 (Moped)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 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 00	6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 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
		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 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 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4.

다. 보장구의 지원대상 및 수급절차

□ 지원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실시되며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함.

1.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적용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함.
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15%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

□ 수급절차

1.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함
2. 기타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제작. 판매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보장구에 대한 검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급여 신청.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됨.)

라. 보장구 지급 현황

- 장애인 보장구는 2002년도에 24,566건 (6,693,043원), 2003년에 27,067건 (7,149,238원), 2004년도에 32,079건(8,599,146원), 2005년에는 48,957건 (21,669,161원)으로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 2005년도 장애인 보장구는 2002년도에 비해 지급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 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지급현황 ● ●

(단위 : 건, 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566	6,693,043	27,067	7,149,238	32,079	8,599,146	48,957	21,669,161	32,865	17,460,966

자료: 「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 국민보험공단, 2006.8.

□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문제는

첫째,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기준과 수급자의 가격이 불명확하여 보장구의 지급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지급되어 수급자가 고가의 보장구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둘째로, 품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악덕 보장구 판매업자가 횡행하며 장애인의 건강권 확립과 재활치료라는 목적으로 구축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로써 발생하는 피해와 짐은 고스란히 저소득의 장애환자가 짊어지게 된다는 점임.

셋째로, 지역별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1단원에서 언급했던 전국의 지역별 장애인 수와 지역별 보장구의 지급건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일부 특정 연도에 특정재활 보장구의 지급건수가 다른 지역 및 연도에 대비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의 지급을 하고 있음.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의 관리제도의 부실과 보장구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는 주요 연령층을 20대 미만과 2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3분류로 구분해 볼 때 2006년 6월 현재, 20세미만은 3,281건, 20세이상 50세미만은 12,492건, 50세이상은 17,092건으로 20세이상 50세미만은 20세 미만의 4배, 50세 이상은 20세미만의 5배를 차지하고 있음.

• • 건강보험공단 연령별 지급현황 • •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566	6,693,043	27,067	7,149,238	32,079	8,599,146	48,957	21,669,161	32,865	17,460,966
20세미만	3,074	716,983	3,615	851,882	4,244	987,243	5,642	1,775,064	3,281	1,316,605
20세이상~ 50세미만	10,685	3,177,860	10,897	3,119,750	12,635	3,691,956	19,337	9,241,363	12,492	6,794,889
50세이상	10,807	2,798,200	12,555	3,177,606	15,200	3,919,947	23,978	10,652,734	17,092	9,349,472

자료: 보건복지부, 2006.8.

• • 건강보험공단 유형별 지급현황 • •

(단위 : 건, 천원)

용도	분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566	6,693,043	27,067	7,149,238	32,079	8,599,146	48,957	21,669,161	32,865	17,460,966	
지체 (뇌병변)	팔의지	1,128	388,244	921	314,780	1,035	389,378	1,682	818,713	998	521,862	
	다리의지	2,200	2,035,971	2,037	1,962,262	2,510	2,495,725	3,301	4,327,653	1,618	2,261,738	
	팔보조기	196	18,381	246	22,148	380	31,528	413	39,498	238	23,785	
	척추보조기	394	96,706	477	111,891	648	154,900	925	244,585	600	167,872	
	굴반보조기	19	1,776	18	2,208	29	2,880	56	5,952	27	2,688	
	다리보조기	3,464	744,184	4,153	903,464	5,152	1,105,293	6,578	1,733,413	3,464	991,534	
	기타 보장구	지팡이	324	4,765	375	5,647	507	7,752	590	8,916	220	3,309
		목발	87	1,045	110	1,347	104	1,273	151	1,808	37	443
		휠체어	4,661	1,060,595	5,429	1,234,803	6,568	1,495,556	8,351	2,576,572	4,893	1,688,057
		전동휠체어							2,328	3,869,470	2,661	4,430,739
		전동스쿠터							2,349	3,098,352	2,925	3,871,093
		정형외과용 구두							2,965	516,558	3,464	605,032
시각	저시력보조안경	435	33,428	569	43,446	825	63,769	1,111	85,838	655	50,853	
	콘택트렌즈	61	3,517	65	3,752	67	4,000	118	6,947	54	3,118	
	돋보기	129	8,363	133	8,753	185	12,143	237	16,547	153	10,570	
	망원경	43	3,370	39	2,899	65	4,847	60	4,525	46	3,476	
	의안	1,350	322,972	1,631	390,775	2,032	486,079	1,972	472,337	1,100	263,712	
	흰지팡이	342	3,806	349	3,889	471	5,254	468	5,206	194	2,159	
청각	보청기	9,582	1,906,207	10,301	2,052,054	11,290	2,254,369	15,118	3,762,847	9,441	2,528,206	
언어	체외용인공후두	151	59,713	214	85,120	211	84,400	184	73,424	77	30,720	

자료: 보건복지부, 2006.8.

- 200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건수 및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면 복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기준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입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만약 보장구의 가격이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보장구 금액의 80%만을 지급하고 있음. 지급금액을 지급건당 단가로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보장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기준액을 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2006년 1~6월까지 품목별 지급건수 및 금액 • •

(단위 : 건, 천원)

연번	보 장 구 유 형	건수	금액
합계		32,865	17,460,966
1	골반보조기	27	2,688
2	목발	37	443
3	전동스쿠터	2,925	3,871,093
4	전동휠체어	2,661	4,430,739
5	정형외과용구두	3,464	605,032
6	지팡이	220	3,309
7	휠체어	4,893	1,688,057
8	긴다리(장하지)보조기-골반보조기미부착	367	128,058
9	긴다리(장하지)보조기-골반보조기부착	249	119,256
10	무릎관절(슬관절)보조기-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	113	20,224
11	무릎관절보조기-레눅스힐	31	4,192
12	무릎관절보조기-무릎안쪽및바깥쪽견인대손상및앞 십자인대손상용	70	7,004
13	발목(족)관절보조기-90도고정	414	72,054
14	발목관절(단하지)보조기-크렌자크식	397	130,609
15	발목관절보조기(족관절고정단하지보조기)	1,310	359,943
16	양쪽긴다리보조기(양하지마비를위한보조기)	83	51,079
17	짧은다리(단하지)플라스틱보조기	241	32,886
18	짧은다리보조기-무릎관절체중부하식	189	66,229
19	넓적다리(대퇴절단)체중부하의지-실리콘형	99	181,814
20	넓적다리(대퇴절단)체중부하의지-일반형	20	25,992
21	넓적다리의지(대퇴절단의지)-실리콘형	268	498,990
22	넓적다리의지(대퇴절단의지)-일반형	59	79,824

연번	보 장 구 유 형	건 수	금 액
23	무릎관절의지(슬관절이단의지)-실리콘형	29	46,456
24	무릎관절의지(슬관절이단의지)-일반형	15	17,880
25	싸임식발목관절의지(싸임식절단의지)-실리콘형	37	31,040
26	싸임식발목관절의지(싸임식절단의지)-일반형	13	5,379
27	엉덩관절의지(고관절이단의지)	7	8,632
28	의족(족부절단의지)	28	4,928
29	의족(족부절단의지)-일반형	95	58,368
30	종아리(하퇴절단)굴곡체중부하의지-실리콘형	691	1,024,656
31	종아리(하퇴절단)굴곡체중부하의지-일반형	52	52,808
32	종아리의지(하퇴절단의지)-실리콘형	116	143,024
33	종아리의지(하퇴절단의지)-일반형	33	20,128
34	짧은종아리의지(단소하퇴절단의지)-실리콘형	40	48,576
35	짧은종아리의지(단소하퇴절단의지)-일반형	13	9,068
36	한쪽편골반의지(후4박절단의지)	3	4,176
37	دون보기	153	10,570
38	망원경	46	3,476
39	저시력보조안경	655	50,853
40	콘택트렌즈	54	3,118
41	흰지팡이	194	2,159
42	체외용인공후두-5년	77	30,720
43	의안	1,100	263,712
44	등.허리.엉치뼈보조기-등허리엉치뼈재킷	509	158,362
45	목뼈(경추)보조기	6	1,824
46	목뼈(경추)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형	4	168
47	목뼈(경추)보조기-필라델피아형	7	384
48	척추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16	1,933
49	콜셋	39	2,346
50	허리.엉치뼈(요천추)보조기	19	2,856
51	보청기	9,441	2,528,206
52	긴팔보조기(장상지보조기)-각도조절형	11	2,632
53	긴팔보조기(장상지보조기)-일반형	22	4,456
54	손가락관절보조기	13	536
55	어깨뼈외전보조기(견갑골외전장상지보조기)-실리콘형	13	1,976
56	짧은팔(단상지)보조기	179	14,185
57	손가락의지(미관절절단의지)미관형	127	25,328
58	손목관절의지(완관절이단의지)기능형	89	53,120
59	손목관절의지(완관절이단의지)미관형	80	28,670
60	손의지(수근골및수장골절단의지)기능형	78	37,144
61	손의지(수근골및수장골절단의지)미관형	92	18,272
62	아주짧은아래팔의지(단소전박절단의지)기능형	92	62,728

연번	보 장 구 유 형	건 수	금 액
63	아주짧은아래팔의지(단소전박절단의지)미관형	62	27,504
64	어깨가슴의지(전4박절단의지)미관형	1	576
65	어깨가슴의지(전5박절단의지)기능형	5	6,720
66	어깨관절의지(견갑관절이단의지)기능형	47	56,176
67	어깨관절의지(견갑관절이단의지)미관형	7	4,392
68	짧은아래팔의지(단전박절단의지)기능형	42	25,200
69	짧은아래팔의지(단전박절단의지)미관형	34	12,040
70	짧은위팔의지(단상박절단의지)기능형	33	32,400
71	짧은위팔의지(단상박절단의지)미관형	11	5,016
72	팔꿈치관절의지(주관절이단의지)기능형	23	22,816
73	팔꿈치관절의지(주관절이단의지)미관형	6	2,688
74	표준아래팔의지(장전박절단의)기능형	68	43,560
75	표준아래팔의지(장전박절단의)미관형	59	20,880
76	표준위팔의지(표준상박절단의지)기능형	33	32,800
77	표준위팔의지(표준상박절단의지)미관형	9	3,832

자료: 「2006년 1~6월까지 품목별 지급건수 및 금액연령별 지급현황」, 보건복지부, 2006.8.

- 2002년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지역에서 의료기기품목(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정형외과구두, 휴대용 무선신호기, 음향신호기 리모콘,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호기) 의 지급현황을 살펴보았음.
- 서울의 보장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도 휴대용 무선신호기의 경우 남성 165건 여성 115건 총 280건으로 예년에 비해 2배내지 3배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음향신호기리모콘의 경우 2003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07건 여성 61건으로 총 168건을 지급하였음. 이 지급건수는 2002년 16건 2004년 87건 2005년 52건에 비해 급격한 증가임.

• • 장애인 보장구 연도별, 연령별, 보장구별 지급현황(서울) • •

연 도	연령별	전 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휠체어		정형외과 구두		휴대용무 선신호기		보청기		음향신호 기리모콘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소 계					169	119	19	19	31	25	89	88	9	7	37	20
	20세미만					23	21	1		2	1	3	4	-	-	1	
	20-29	-	-	-	-	13	14	1	-	-	2	5	4	-	-	4	1
	30-39	-	-	-	-	25	13	2	2	7	4	2	4	1	1	6	8
	40-49	-	-	-	-	37	13	7	3	5	7	9	12	1	1	12	4
	50-59	-	-	-	-	35	22	3	6	7	7	11	4	3	3	9	1
	60-69	-	-	-	-	22	15	4	4	6	3	13	10	3	1	3	5
	70-79	-	-	-	-	11	14	1	3	3	1	30	26	1	1	2	1
	80세이상	-	-	-	-	3	7	-	1	1	-	16	24	-	-	-	-
2003	소 계	-	-	-	1	161	109	-	-	165	115	82	95	107	61	36	31
	20세미만	-	-	-	-	18	14	-	-	2	4	-	2	2	-	-	-
	20-29	-	-	-	-	2	7	-	-	10	9	-	3	4	1	5	1
	30-39	-	-	-	1	19	12	-	-	25	26	4	2	9	6	6	10
	40-49	-	-	-	-	42	16	-	-	40	26	12	11	21	6	9	5
	50-59	-	-	-	-	37	18	-	-	30	16	15	9	29	20	9	5
	60-69	-	-	-	-	24	15	-	-	35	17	18	21	34	13	4	6
	70-79	-	-	-	-	16	24	-	-	16	13	24	25	7	11	3	4
	80세이상	-	-	-	-	3	3	-	-	7	4	9	22	1	4	-	-
2004	소 계	-	-	2	3	151	119	-	-	86	53	80	106	48	39	35	23
	20세미만	-	-	-	-	15	13	-	-	6	2	4	1	-	-	-	4
	20-29	-	-	-	-	5	5	-	-	6	10	1	5	2	1	3	4
	30-39	-	-	-	-	18	6	-	-	3	7	3	7	11	8	10	5
	40-49	-	-	-	1	36	28	-	-	30	7	7	6	16	10	12	1
	50-59	-	-	-	-	37	15	-	-	14	7	10	14	9	8	2	1
	60-69	-	-	-	1	23	21	-	-	12	9	13	16	4	5	5	2
	70-79	-	-	2	1	9	13	-	-	11	7	25	28	5	6	2	5
	80세이상	-	-	-	-	8	18	-	-	4	4	17	29	1	1	1	1
2005	소 계	261	187	229	144	247	206	87	47	60	61	113	147	32	20	68	34
	20세미만	4	6	-	-	37	48	7	3	2	1	1	4	1	-	2	4
	20-29	17	12	2	2	23	17	2	2	3	3	1	5	1	1	2	2
	30-39	27	26	23	23	27	13	9	5	12	9	2	5	3	5	17	2
	40-49	67	32	67	46	63	23	29	9	17	13	16	13	7	3	24	11
	50-59	66	36	72	41	49	29	26	12	10	7	17	16	9	2	12	6
	60-69	52	39	41	16	33	21	10	12	7	12	24	25	5	5	8	2
	70-79	26	31	15	10	13	38	3	3	7	10	32	48	5	3	3	6
	80세이상	2	5	9	6	2	17	1	1	2	6	20	31	1	1	-	1
2006	소 계	246	149	216	131	162	123	106	51	23	17	88	127	20	8	30	16
	20세미만	11	8	4	1	36	23	13	2	3	1	2	5	-	-	-	1
	20-29	15	13	2	5	10	12	4	1	1	-	3	2	1	-	1	1
	30-39	28	17	16	9	21	11	9	6	1	4	3	8	4	1	3	3
	40-49	77	36	70	33	37	15	22	12	4	1	13	8	9	2	15	
	50-59	56	25	57	31	27	20	40	13	5	2	14	6	3	-	7	3
	60-69	37	23	40	25	19	15	14	9	3	3	16	16	2	3	3	2
	70-79	18	22	20	23	10	16	2	7	3	3	19	40	1	2	1	1
	80세이상	4	5	7	4	2	11	2	1	3	3	18	42	-	-	-	1
총 계		507	336	447	279	890	676	212	117	365	271	452	563	216	135	206	12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8.

□ 부산지역의 보장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도부터 수가가 인정되고 있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경우 2005년도와 2006년 전반기를 비교해 볼 때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것은 다른 지역의 동일 보장구 지급현황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며, 2005년도의 경우 전동휠체어가 남성 108건 여성 59건으로 167건을 지급하였으나 2006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남성 231건 여성 146건으로 총 377건이 지급되어 2005년도 대비 약 3배가 증가하고 있음.

• • 장애인 보장구 연도별, 연령별, 보장구별 지급현황(부산) • •

연 도	연 령 별	전 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정형외과 구두		휴대용무 선신호기		보청기		음 향 신 호 기리모콘		시 각 장 애 인 용 저 시 력보조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소 계	0	0	0	0	98	54	0	0	2	2	33	37	2	0	4	5
	20세미만	0	0	0	0	5	3	0	0	0	0	1	0	0	0	0	0
	20-29	0	0	0	0	8	3	0	0	0	0	0	0	0	0	0	1
	30-39	0	0	0	0	11	9	0	0	0	0	0	4	0	0	1	0
	40-49	0	0	0	0	21	8	0	0	0	1	6	3	1	0	0	1
	50-59	0	0	0	0	30	8	0	0	1	1	7	3	1	0	3	2
	60-69	0	0	0	0	15	9	0	0	1	0	10	8	0	0	0	0
	70-79	0	0	0	0	6	10	0	0	0	0	5	9	0	0	0	1
	80세이상	0	0	0	0	2	4	0	0	0	0	4	10	0	0	0	0
	소 계	0	0	0	0	132	71	0	0	24	15	31	35	0	0	10	10
2003	소 계	0	0	0	0	132	71	0	0	24	15	31	35	0	0	10	10
	20세미만	0	0	0	0	9	5	0	0	0	0	0	2	0	0	0	1
	20-29	0	0	0	0	7	3	0	0	1	2	0	1	0	0	0	0
	30-39	0	0	0	0	19	9	0	0	2	2	3	2	0	0	0	0
	40-49	0	0	0	0	41	14	0	0	12	3	6	4	0	0	3	3
	50-59	0	0	0	0	32	19	0	0	4	4	2	4	0	0	5	2
	60-69	0	0	0	0	11	9	0	0	2	1	7	5	0	0	2	1
	70-79	0	0	0	0	10	10	0	0	2	3	5	11	0	0	0	3
	80세이상	0	0	0	0	3	2	0	0	1	0	8	6	0	0	0	0
	소 계	0	0	0	0	108	61	0	2	28	17	35	51	11	9	16	11
2004	소 계	0	0	0	0	108	61	0	2	28	17	35	51	11	9	16	11
	20세미만	0	0	0	0	7	4	0	2	1	2	2	3	1	0	1	0
	20-29	0	0	0	0	2	1	0	0	0	1	0	0	0	0	0	0
	30-39	0	0	0	0	14	4	0	0	6	2	5	2	2	0	2	2
	40-49	0	0	0	0	30	11	0	0	9	2	5	4	1	4	6	1
	50-59	0	0	0	0	21	14	0	0	5	3	9	9	2	1	3	4
	60-69	0	0	0	0	24	12	0	0	5	4	3	11	4	3	2	2

연 도	연 령 별	전 동 휠체어		전 동 스쿠터		휠체어		정형외과 구두		휴대용무 선신호기		보청기		음 향 신 호 기리모콘		시 각 장 애 인 용 저 시 력 보조기	
	70-79	0	0	0	0	9	7	0	0	2	3	10	13	1	1	2	2
	80세이상	0	0	0	0	1	8	0	0	0	0	1	9	0	0	0	0
2005	소 계	108	59	130	86	151	90	23	3	22	11	51	68	1	1	35	11
	20세미만	1	0	1	0	6	8	3	0	1	1	2	1	0	0	1	1
	20-29	10	7	3	3	10	2	0	1	3	0	1	2	0	0	0	1
	30-39	17	8	14	10	20	6	2	0	2	1	2	2	0	0	1	0
	40-49	39	23	41	21	51	20	11	0	7	3	8	10	1	0	11	4
	50-59	24	8	34	25	29	15	5	0	2	1	13	10	0	0	13	4
	60-69	10	4	22	16	22	20	2	1	1	3	9	12	0	1	7	0
	70-79	5	7	11	9	9	11	0	1	6	2	12	14	0	0	2	1
	80세이상	2	2	4	2	4	8	0	0	0	0	4	17	0	0	0	0
2006	소 계	231	146	134	77	76	65	30	12	4	3	44	37	1	5	15	9
	20세미만	9	3	1	1	16	12	3	0	1	1	1	2	0	0	0	1
	20-29	11	10	2	0	7	9	1	0	0	1	0	0	0	0	0	0
	30-39	24	11	16	6	9	5	6	2	2	0	0	1	0	1	1	1
	40-49	61	34	35	22	17	5	8	5	0	1	10	3	0	0	4	5
	50-59	66	41	37	16	10	12	6	2	1	0	12	5	0	1	8	1
	60-69	38	29	26	20	9	7	5	3	0	0	8	8	1	2	0	1
	70-79	14	16	12	10	8	11	0	0	0	0	7	10	0	0	2	0
	80세이상	8	2	5	2	0	4	1	0	0	0	6	8	0	1	0	0
총 계		339	205	264	163	565	341	53	17	80	48	194	228	15	15	80	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8.

□ 대구지역의 보장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02년도부터 06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고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특이한 점은 여성에서 정형외과의 구두와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의 신청이 남성에 비해 월등한 높았음. 최근 5년간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의 경우, 남성은 55건에 비해 여성에 대한 지급은 남성의 5배인 206건임.

□ 한편 휠체어의 경우, 2003년(86건) 대비 2004년도(178건)에 2배이상 증가하고 있음. 2005년부터 수가가 인정된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경우 2005년도 각각 233건, 265건을 지급하고 있는데 휠체어와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의 지급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중복 수급 및 과잉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

• • 장애인 보장구 연도별, 연령별, 보장구별 지급현황(대구) • •

연 도	연령별	전 등 휠체어		전동 스쿠터		휠체어		정형외과 구두		휴대용무 선신호기		보청기		음 향 신 호 기리모콘		시 각 장 애 인 용 저 시 력보조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소 계	0	0	0	8	75	56	6	11	0	2	18	30	0	0	2	21
	20세미만	0	0	0	0	9	6	0	0	0	1	1	2	0	0	0	0
	20-29	0	0	0	0	5	6	1	1	0	0	2	0	0	0	0	1
	30-39	0	0	0	1	10	7	1	0	0	0	0	1	0	0	0	1
	40-49	0	0	0	3	20	8	3	5	0	1	1	6	0	0	0	9
	50-59	0	0	0	4	12	8	1	3	0	0	4	5	0	0	2	3
	60-69	0	0	0	0	14	6	0	2	0	0	5	6	0	0	0	3
	70-79	0	0	0	0	5	9	0	0	0	0	3	7	0	0	0	3
	80세이상	0	0	0	0	0	6	0	0	0	0	2	3	0	0	0	1
2003	소 계	0	1	0	7	86	61	0	10	16	16	23	20	16	9	11	23
	20세미만	0	0	0	0	9	6	0	0	0	1	1	1	0	0	0	0
	20-29	0	0	0	0	1	1	0	0	0	0	0	1	1	0	0	0
	30-39	0	1	0	0	8	1	0	1	2	3	0	1	4	3	2	4
	40-49	0	0	0	1	17	18	0	2	7	4	5	0	3	1	5	5
	50-59	0	0	0	3	24	16	0	3	4	2	4	1	4	0	3	5
	60-69	0	0	0	1	16	10	0	2	1	2	3	6	3	3	0	6
	70-79	0	0	0	1	8	7	0	1	2	2	8	8	1	2	1	3
	80세이상	0	0	0	1	3	2	0	1	0	2	2	2	0	0	0	0
2004	소 계	0	0	0	13	178	78	0	6	26	16	28	20	12	9	19	53
	20세미만	0	0	0	1	9	2	0	1	0	1	0	0	0	0	1	1
	20-29	0	0	0	0	6	3	0	0	2	1	1	0	2	0	0	1
	30-39	0	0	0	1	22	11	0	1	6	2	1	2	0	0	3	2
	40-49	0	0	0	4	57	24	0	4	5	4	5	9	4	1	7	19
	50-59	0	0	0	2	39	18	0	0	4	1	5	2	3	2	4	17
	60-69	0	0	0	3	26	9	0	0	7	1	7	1	2	3	3	12
	70-79	0	0	0	2	17	8	0	0	2	5	7	5	1	1	1	0
	80세이상	0	0	0	0	2	3	0	0	0	1	2	1	0	2	0	1
2005	소 계	130	103	158	107	156	113	57	54	22	32	40	42	21	7	16	87
	20세미만	1	2	0	3	6	2	1	3	1	1	2	2	1	0	3	5
	20-29	2	3	2	2	4	3	1	1	0	2	2	3	0	0	0	2
	30-39	16	11	7	9	11	6	4	6	2	1	1	0	0	0	4	3
	40-49	45	27	44	38	38	24	22	20	10	9	4	5	3	2	4	29
	50-59	33	19	47	27	49	23	21	15	3	7	6	4	6	1	3	30
	60-69	18	26	39	18	29	25	7	9	4	8	7	9	9	3	1	10

연 도	연령별	전 등 휠체어		전 등 스쿠터		휠체어		정형외과 구두		휴대용무 선신호기		보청기		음향신호 기리모콘		시각장애 인용저시 력보조기	
	70-79	13	14	18	10	15	29	1	0	2	2	15	13	2	1	1	8
	80세이상	2	1	1	0	4	1	0	0	0	2	3	6	0	0	0	0
2006	소 계	22	24	51	27	23	11	39	16	11	21	18	19	3	1	7	22
	20세미만	1	1	0	0	4	0	4	1	0	1	1	0	0	0	0	2
	20-29	0	1	0	0	0	0	0	0	0	0	0	1	1	0	2	0
	30-39	0	1	4	5	3	3	1	1	1	2	0	1	0	0	1	3
	40-49	8	3	12	8	4	3	10	3	5	6	5	4	2	1	3	4
	50-59	6	4	17	3	4	2	14	4	3	7	3	0	0	0	0	9
	60-69	4	6	11	6	4	1	8	3	0	2	2	3	0	0	1	2
	70-79	3	7	3	5	2	1	1	3	1	3	4	5	0	0	0	1
	80세이상	0	1	4	0	2	1	1	1	1	0	3	5	0	0	0	1
총 계		152	128	209	162	518	319	102	97	75	87	127	131	52	26	55	20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8.

마. 주요 보장구 수 · 출입 현황

□ 장애인 보장구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5년 장애인 보장구 수입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 보면, 휠체어의 경우, 중국산 19,449개를 1,493,018달러에 수입하여 한 개당 75,076⁸⁾원임.

□ 보청기의 경우 2004년도 486개를 12,556달러에 수입하여 한 개당 26,267원임. 의료용 스쿠터의 경우, 2005년도 대만산 1991개를 1,439,929달러에 수입하여 한 개당 707,308원임.

8) 2005년 평균 환율 1024.03원

• • 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품목) 수입현황 • •

(단위: 건, USD)

품목명	제조국	2003년		2004년		2005년	
		수량	수입금액	수량	수입금액	수량	수입금액
휠체어	대만	4,212	1,158,517	1,628	1,403,834	6,707	7,364,224
	독일	344	542,321	1,197	1,389,558	1,846	3,583,665
	중국	4,990	428,726	12,462	1,093,221	19,449	1,493,018
	일본	218	408,302	292	537,368	245	440,786
	미국	488	344,084	597	1,457,170	179	301,523
	스위스	10	37,578	2,066	110,114	24	74,703
	스웨덴	1	11,465	-	-	-	-
	프랑스	1	3,760	2	14,027	1	5,246
	이탈리아			39	50,610	22	30,808
	합계	10,264	2,934,754	18,283	6,055,902	28,473	13,293,973
의료용 스쿠터	대만	-	-	-	-	1,991	1,439,929
	합계	0	0	0	0	1,991	1,439,929
보청기	덴마크	1,767	521,487	2,447	773,112	2,487	724,598
	싱가폴	7,277	375,570	8,104	459,377	9,493	535,796
	미국	4,277	343,255	5,269	382,689	4,880	334,222
	대만	6,000	248,404	2,115	69,755	3,850	125,096
	스위스	534	137,065	-	-	501	98,467
	독일	1,184	46,129	1,310	93,411	1,115	73,389
	캐나다	480	31,240	75	16,339	174	51,243
	스페인	200	13,830	100	7,500	100	8,700
	중국	20	4,683	486	121,556	-	-
	오스트리아	30	3,813	-	-	117	3,2476
	호주	191	3,599	45	8,882	10	2,170
	이탈리아	1	281	-	-	28	7,668
	아일랜드	1	180	1	513	-	-
	일본	1	16	62	8,881	20	2,088
	페로아일랜드					30	9,054
	스웨덴					35	50,885
	합계	21,963	1,729,552	20,014	1,942,015	22,840	2,055,852
시력보정용 안경	중국	504,600	576,819	1,731,994	1,110,951	847,551	702,708
	이태리	5,200	11,694	-	-	-	-
	합계	509,800	588,513	1,731,994	1,110,951	847,551	702,708

품목명	제조국	2003년		2004년		2005년	
		수량	수입금액	수량	수입금액	수량	수입금액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중국	9,085,718	6,588,762	10,827,928	8,207,693	12,820,768	11,772,458
	태국	2,734,395	5,256,986	2,167,569	4,109,491	2,829,317	6,391,512
	일본	771,930	2,181,192	424,348	2,107,346	247,442	2,052,162
	독일	252,779	2,093,212	163,622	1,433,997	277,463	2,654,876
	필리핀	229,113	307,002	174,658	166,568	67,212	96,627
	싱가폴	63,325	288,255	25,347	88,779	104,793	59,780
	미국	8,615	53,655	4,848	20,880	19,511	39,548
	인도네시아	34,288	44,071	48,013	72,625	80,848	64,736
	호주	20,918	40,975	7,956	32,646	-	-
	인도	9,630	36,699	1,650	8,662	-	-
	홍콩	27,275	32,858	41,186	45,498	-	-
	대만	58,866	12,929	21,275	34,017	20,435	31,936
	말레이시아	3,295	3,777	10,315	15,216	1,077	4,641
	헝가리	-	-	-	-	28,353	207,237
	기타국	-	-	-	-	1,930,067	1,169,243
	합계	13,300,147	16,940,372	13,918,715	16,343,418	18,427,286	24,544,756
소프트 콘택트렌즈	미국	1,736,752	8,165,016	1,570,538	10,822,542	2,182,879	16,525,150
	아일랜드	797,708	3,852,218	985,845	5,771,435	805,226	7,481,729
	영국	5,250,713	1,817,718	6,939,563	2,268,437	8,893,096	3,067,048
	브라질	109,928	275,338	13,010	41,363	2,295	7,295
	인도네시아	30,450	140,434	42,624	192,634	114,473	310,622
	아르헨티나	2,260	16,690	640	4,159	-	-
	대만	1,891	5,428	1,448	2,609	3,004	9,122
	일본	140	1,426	200	1,806	420	3,446
	독일			1,556	6,451	20	70
	이스라엘			500	500	-	-
	싱가폴			-	-	1,707	1,107
	합계	7,929,842	14,274,268	9,555,924	19,111,936	12,003,120	27,405,589
하드콘택 트렌즈	미국	128,136	1,546,041	169,119	1,953,570	201,208	2,362,036
	일본	70,534	539,026	73,902	603,351	83,353	695,680
	영국	6,924	87,969	17,411	270,365	12,371	297,456
	합계	205,594	2,173,036	260,432	2,827,286	296,932	3,355,172
인공후두	스웨덴	1,000	21,119	2,201	33,367	1,458	38,558
	미국	17	308	30	1,425	18	808
	합계	1,017	21,427	2,231	34,792	1,476	39,366
의안	스위스	5	2,493	-	-	-	-
	합계	5	2,493	0	0	0	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8.

● ● 장애인 보장구 수출현황 ● ●

(단위: 건, USD)

품목명	제조국	2004년		2005년	
		수량	수입금액	수량	수입금액
휠체어	일본	9,441	2,425,860	6,778	1,795,713
	미국	1,254	682,176	348	189,312
	합계	10,695	3,108,036	7,126	1,985,025
스쿠터	합계	-	-	-	-
보청기	터키	-	-	20	1,710
	유고	-	-	33	2,863
	러시아	-	-	45	5,934
	합계	0	0	98	10,507
시력보정용안경	일본	9,600	35,520	3,845	13,073
	합계	9,600	35,520	3,845	13,073
시력보정용안경 렌즈	네덜란드열도	67,852	1,004,874	21,682	686,322
	아르헨티나	591,930	1,479,825	-	-
	오스트리아	28,492	119,069	-	-
	호주	36,989	221,934	-	-
	브라질	995,105	2,468,073	393,306	838,801
	캐나다	461,561	1,728,874	253,955	1,037,246
	스위스	16,928	59,248	62,025	101,073
	중국	114,532	349,500	374,427	843,587
	독일	905,414	2,367,557	674,395	2,790,965
	스페인	338,442	846,104	18,487	83,191
	프랑스	355,426	773,949	208,934	731,269
	홍콩	577,327	1,453,261	1,378,382	4,847,617
	크로아티아	1,471	5,148	-	-
	이스라엘	95,888	412,318	236,849	435,802
	이탈리아	1,326,636	2,309,891	524,645	1,688,822
	일본	12,803,073	41,722,863	9,213,255	25,474,054
	멕시코	1,178,240	2,860,515	3,892,273	4,688,718
	말레이시아	326,112	933,843	94,464	304,916
	뉴질랜드	1,582	39,483	264	1,320
	폴란드	10,746	30,641	91,351	65,613
	러시아연방	133,120	368,187	720,810	1,976,613
	스웨덴	7,904	29,419	8,623	32,547
	싱가폴	694,595	1,834,887	211,528	641,297
	태국	28,556	22,869	324,120	340,326
	대만	1,257,907	3,534,638	827,247	1,736,833
	미국	887,506	1,872,174	535	1,000
	인도	-	-	36,198	85,609
	이란	-	-	100,988	403,952
	슬로베니아	-	-	8,613	30,921
	터키	-	-	66,789	255,394
	우크라이나	-	-	449,330	582,331
	기타국	-	-	5,468,221	13,952,125
	합계	23,243,334	68,849,144	25,661,696	64,658,264

품목명	제조국	2004년		2005년	
		수량	수입금액	수량	수입금액
소프트 콘택트렌즈	칠레	500	2,000	-	-
	중국	653,393	430,620	2,687,709	1,822,662
	독일	43,312	21,656	-	-
	영국	153,848	342,285	149,109	301,511
	홍콩	36,511	18,028	198,929	351,003
	인도네시아	9,234	10,721	2,505,210	4,538,888
	인도	3,888	5,838/	29,158	64,716
	이란	1,217,630	2,427,951	25,368	24,400
	일본	4,244,748	3,015,640	1,799,235	2,828,015
	쿠웨이트	15,348	10,590	78,594	117,897
	레바논	16,328	26,983	10,189	22,084
	리비아	4,000	1,000	30,794	80,064
	말레이시아	8,733	7,007	652,344	456,640
	파키스탄	49,935	72,631	101,195	124,810
	사우디아라비아	7,951	27,241	-	-
	싱가포르	200	300	14,115	28,230
	미국	331,555	653,361	318,974	596,637
	베트남	10,000	8,000	-	-
	아랍에미리트연합	-	-	444,761	996,477
	호주	-	-	135,588	210,161
	브라질	-	-	307,691	584,612
	프랑스	-	-	45,000	90,000
	요르단	-	-	29,991	56,982
	페루	-	-	48,480	264,790
	필리핀	-	-	161,181	173,383
	시리아	-	-	21,400	51,822
	태국	-	-	45,570	90,587
	대만	-	-	892,062	142,729
	우크라이나	-	-	64,284	72,640
	기타	407,150	610,725	923,635	1,377,150
	합계	7,214,264	7,692,577	11,720,566	15,468,890
하드	이란	1,661	12,922	1,661	12,922
콘택트렌즈	합계	1,661	12,922	1,661	12,922
인공후두	합계	-	-	-	-
의안	합계	-	-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8.

- ※ 생산 및 수입·수출현황 보고는 전년도 실적을 당해년도 4월1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있으므로 2006년 수출입 실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 의료기기 수출 현황은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부터 보고받기 시작하여 2003년도 수출실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바. 보장구 제조·판매·수입업소 현황

• • 우리나라 보장구 제조업소 • •

(2006년 6월)

	제조업소수	서울	대구	울산	경북	전남	경기	경북	충북	충남	강원	부산	광주
휠체어	12	5	4	1	1	1							
(전동)스쿠터	2	1				1							
보청기	20	10	3	1	1				1			3	1
시력보정용안경	8	1	1			1	3				1	1	
하드콘택트렌즈	11	3					3	1	2	2			
소프트콘택트렌즈	22	8	4		1		6		1	1			1
인공후두	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8.

• • 2006년 보청기 제조업소 • •

제조	2156	경북	구미보청기	보청기
제조	2316	광주시	알고코리아	보청기
제조	825	대구시	(주)오디나보청기	보청기
제조	370	대구시	복음보청기	보청기
제조	711	대구시	세기스타(주)	보청기
제조	1441	부산시	(주)가나무역독일스타보청기	보청기
제조	640	부산시	가나안보청기	보청기
제조	634	부산시	동서보청기	보청기
제조	666	서울시	(주)광우메딕스	보청기
제조	431	서울시	(주)스타키코리아	보청기
제조	1848	서울시	(주)우리난청센터	보청기
제조	2162	서울시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보청기
제조	820	서울시	와이텍스코리아(주)	보청기
제조	1274	서울시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보청기
제조	2123	서울시	제일보청기	보청기
제조	739	서울시	지멘스메디칼시스템(주)	보청기
제조	977	서울시	하나보청기	보청기
제조	507	서울시	한국보청기	보청기
제조	2155	울산시	미래보청기	보청기
제조	851	충북	삼미음향기술(주)	보청기

• • 2006년 소프트 콘택트렌즈 제조업소 • •

제조	2067	경기도	(주)엔보이비전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449	경기도	(주)티씨싸이언스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872	경기도	새론제약(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629	경기도	에이앤씨코리아(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645	경기도	엠아이콘택트(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628	경기도	하나광학(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73	경북	(주)미광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601	광주시	(주)지오메디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540	대구시	(주)이.오.에스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827	대구시	듀바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864	대구시	지앤지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836	대구시	코렉스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395	서울시	(주)누네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01	서울시	(주)새한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015	서울시	(주)인터로조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880	서울시	라이트옵티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852	서울시	비전케어통상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323	서울시	씨그마코리아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921	서울시	에스엠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674	서울시	해성메디칼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320	충남	(주)베스콘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	1938	충북	스텐모아	소프트콘택트렌즈

• • 2006년 소프트 콘택트렌즈 제조업소 • •

제조	1672	경기도	(주)해피비전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1645	경기도	엠아이콘택트(주)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628	경기도	하나광학(주)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902	경북	(주)루시드코리아봉화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101	서울시	(주)새한콘택트렌즈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83	서울시	(주)시리스케이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1015	서울시	(주)인터로조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320	충남	(주)베스콘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1538	충남	(주)벨모아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2159	충북	(주)렌티스	하드콘택트렌즈
제조	1818	충북	이티씨	하드콘택트렌즈

• • 2006년 시력보정용안경 제조업소 • •

제조	2208	강원도	(주)우광케미칼	시력보정용안경
제조	2275	경기도	하쿠옵티머스	시력보정용안경
제조	1528	경기도	(주)스포컴	시력보정용안경
제조	2317	경기도	(주)우성씨텍	시력보정용안경
제조	1734	대구시	(주)유레카	시력보정용안경
제조	526	부산시	(주)삼진광학	시력보정용안경
제조	2291	서울시	타비다	시력보정용안경
제조	753	전남	(주)케미그라스 담양공장	시력보정용안경

• • 2006년 휠체어 제조업소 • •

제조	2283	경북	(주)오텍	휠체어
제조	304	대구시	(주)대세엠케어	휠체어
제조	1913	대구시	(주)에스에스케어	휠체어
제조	223	대구시	대성공업(주)	휠체어
제조	412	대구시	미키코리아(주)	휠체어
제조	896	서울시	(주)다솔교역	휠체어
제조	1874	서울시	(주)메디타운	휠체어
제조	1314	서울시	(주)알앤에이치	휠체어
제조	1312	서울시	(주)케어라인	휠체어
제조	2197	서울시	에이블이엔지	휠체어
제조	1631	울산시	(주)코세엔터프라이즈	휠체어
제조	1759	전남	(주)금강기전 장성공장	휠체어

사. 장애인 보장구 사용현황⁹⁾

□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4월 발표한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5.8%의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율이 오르게다가, 2000년 이후 호흡기장애 및 장루·요루장애 등 신규 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된 데 따른 상승효과임.

9)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루·요루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9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의 순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외에 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의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 •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43.2	63.2	68.9	63.7	18.1	3.5	5.3	1.5	25.8	19.4	61.4	20.5	18.0	97.5	11.3	45.8
없다	56.8	36.8	31.1	36.3	81.9	96.5	94.7	98.5	74.2	80.6	38.6	79.5	82.0	2.5	88.7	5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자료: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0<표6-3-1>.

- 장애유형별로 재가 장애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지팡이(21.0%)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목발(9.7%), 척추보조기(6.6%), 수동휠체어(4.0%)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이동관련 재활보조기구의 소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이고 있는 재활보조기구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으로 51.0%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의안 13.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5.9%의 순임. 또한

청각장애이용 재활보조기구에 있어서는 보청기가 59.7%로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장애이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인공후두(성대)가 2.9%로서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임.

- 신장장애이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3.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이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호흡기가 22.7%, 그리고 기타의 재활보조기구가 40.7%의 소지율을 보임. 또한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가장 높은 장루·요루장애이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3.9%, 피부보호관 7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기저귀매트 1.9%, 욕창방지용 매트 1.7%, 목욕용 의자 0.7%의 소지율을 보이고 있음.

• • 소지 재활보조기구 종류 • •

(단위: %, 명)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이용	상지의지	2.2	청각장애이용	보청기	59.7
및	하지의지	2.0		화상전화기	0.3
뇌병변장애이용	척추보조기	6.6		골도전화기	0.7
	상지보조기	0.8		문자전화기	0.5
	하지보조기	3.1		문자송수신기	0.5
	정형외과용 구두	1.2		음성증폭기	0.5
	지팡이	21.0		인공와우	0.3
	목발	9.7		TV 자막수신기	2.8
	보행기	2.2		기타	0.5
	자세보조기구	1.0			(224,091)
	전동휠체어	0.9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2.9
	수동휠체어	4.0		기타	0.0
	전동스쿠터	0.8			(14,938)
	기타	3.3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3.1
		(969,484)		기타	1.2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시각장애용	안경 (콘택트렌즈)	51.0	호흡기장애	산소호흡기	22.7
	저시력보조기	4.3		기타	40.7
	시각장애인용 환자판이	5.9			(28,100)
	의안	13.2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3.9
	스크린 리더	0.4		피부보호관	75.4
	화면 확대기	1.6		기타	18.6
	휴대용점자정 보단말기	0.2	기타	욕창방지용매트	1.7
	음성손목/탁상 시계	3.5		기저귀매트	1.9
	시각장애인용 안 내견	0.0		목욕용 의자	0.7
	기타	4.7		기타	1.6
		(214,096)			(1,304,117)
안전장애	압력옷	0.0			
	기타	0.0			
		(2,874)			

주) 중복응답비율이며, ()안은 전국 추정수임.

자료: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1<표6-3-2>.

□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어느 정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교적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55.2%,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는 16.8%로 전체적으로 72%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유형별로는 가장 높은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을 보였던 장루·요루장애를 비롯하여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내부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사용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 재활보조기구 현재 사용정도 • •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자주 사용	46.6	52.3	72.6	63.0	40.8	38.3	74.6	32.3	70.9	66.4	60.3	14.9	0.0	84.9	21.6	55.2
자주 사용하는 편	19.8	20.3	12.9	8.1	11.0	31.2	0.0	0.0	14.6	14.2	25.2	0.0	100.0	5.8	0.0	16.8
자주 사용안함	15.2	11.0	8.4	10.2	11.1	19.5	0.0	35.2	0.0	9.4	8.36	28.5	0.0	6.4	50.2	12.5
거의 사용않음	17.8	16.4	6.1	6.11	37.1	11.0	25.4	32.5	14.5	10.0	6.2	56.5	0.0	3.0	28.2	1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22)	(437)	(390)	(378)	(9)	(10)	(4)	(3)	(28)	(21)	(46)	(7)	(2)	(39)	(4)	(2,500)
전국추정수	430,654	168,045	151,199	146,132	3,591	3,879	1,660	1,126	10,390	8,098	17,993	2,747	786	15,083	1,651	963,034

주: 비해당 2,965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

□ 재활보조기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사용이 번거로워서'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25.7%, '별 효과가 없어서' 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재활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 •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사용이 번거로워	35.8	31.8	36.1	31.4	0.0	63.9	100.0	100.0	0.0	25.2	27.5	32.6	-	68.0	0.0	34.0
미관상 흉해서	13.2	12.0	12.3	5.5	0.0	0.0	0.0	0.0	0.0	23.2	14.8	0.0	-	0.0	68.5	11.6
별 효과가 없어	12.3	15.6	44.5	50.2	77.1	36.1	0.0	0.0	53.7	0.0	14.8	67.4	-	32.0	31.5	22.7
사용할 필요가 없어	34.4	32.8	5.1	2.7	0.0	0.0	0.0	0.0	46.3	51.5	29.6	0.0	-	0.0	0.0	25.7
기타	4.8	7.9	1.9	10.3	22.9	0.0	0.0	0.0	0.0	0.0	13.3	0.0	-	0.0	0.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N)	(374)	(118)	(56)	(109)	(4)	(3)	(1)	(2)	(4)	(4)	(7)	(6)	-	(3)	(3)	(694)
전국추정수	144,690	45,109	22,014	42,194	1,730	1,183	421	762	1,507	1,570	2,608	2,337	-	1,408	1,295	268,828

주: 비해당 4,769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 앞으로 필요한 보장구의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지팡이에 대한 수요가 전체의 2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목발(7.3%), 척추보조기(6.4%), 수동휠체어(4.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각장애인의 보장구의 경우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실명자에게 필요한 의안에 대한 수요도 1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에게 대표적인 재활보조기구라 할 수 있는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아 71.8%를 보이고 있으며, 언어장애인의 인공후두에 대한 수요는 5.5%였음.
- 신장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3.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호흡기가 46.7%, 그리고 기타의 재활보조기구가 43.3%의 수요를 나타나고 있음. 한편 장루·요루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3.9%, 피부보호관 8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기저귀매트 2.8%, 목욕용 의자 2.8%, 욕창방지용 매트 2.7%의 수요를 보이고 있음.

● ● 필요 재활보조기구 종류 ● ●

(단위: %, 명)

구분	필요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필요 재활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인용 및 뇌병변장애인용	상지의지	2.3	청각장애용	보청기	71.8
	하지의지	2.0		화상전화기	5.0
	척추보조기	6.4		골도전화기	2.5
	상지보조기	0.9		문자전화기	6.4
	하지보조기	2.9		문자송수신기	1.9
	정형외과용 구두	3.2		음성증폭기	2.4
	지팡이	20.6		인공와우	3.4
	목발	7.3		TV 자막수신기	10.0
	보행기	2.7		기타	0.9
	자세보조기구	1.7			(224,481)
	전동휠체어	3.2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5.5
	수동휠체어	4.7		기타	0.0
	전동스쿠터	2.7	신장장애		(14,938)
	기타	3.9		복막투석기구	13.2
시각장애용		(969,073)	기타		1.2
	안경(콘택트렌즈)	53.4			(33,435)
	저시력보조기	7.0	호흡기장애	산소호흡기	46.7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7.1		기타	43.3
	의안	14.4			(28,100)
	스크린 리더	2.1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3.9
	화면 확대기	4.8		피부보호관	81.3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7		기타	18.6
	음성손목/탁상시계	9.2			(14,634)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9		기타	2.7
	기타	6.6		욕창방지용매트	2.8
안면장애		(215,679)		기저귀매트	2.8
	압력옷	0.0		목욕용 의자	2.8
	기타	0.0		기타	1.9
		(2,874)			(1,303,371)

주: 중복응답비율이며, ()안은 전국 추정수입.

□ 필요한 재활보조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보면 전체의 68.3%가 '구입비용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다' 고 답하고 있으며 6.8%가 '적합한 보장구가 없어서' 이고, 5.8%가 '불편해서' 이며, 5.6%가 '미관상 흉하고 구입처를 잘 몰라서 구입하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음. 이것은 현재, 의료보험공단에서 기준액을 설정하여 수가를 책정하였으나 시장에서 구입하

는 장애보장구의 가격은 훨씬 비싸게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 필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 •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구입비용 때문에	70.6	67.2	63.8	64.1	75.2	83.1	100.0	50.6	63.6	77.3	86.9	100.0	-	51.7	-	68.3
구입처를 몰라서	3.7	6.3	7.0	8.1	24.8	0.0	0.0	0.0	9.3	0.0	4.3	0.0	-	0.0	-	5.6
사용이 불편	6.1	4.6	9.9	4.0	0.0	0.0	0.0	26.2	17.0	0.0	4.4	0.0	-	0.0	-	5.8
미관상 흉해서	8.5	6.8	0.8	2.6	0.0	0.0	0.0	0.0	0.0	0.0	0.0	0.0	-	0.0	-	5.6
별 효과가 없어서	3.3	3.4	4.1	6.5	0.0	0.0	0.0	0.0	0.0	0.0	4.4	0.0	-	0.0	-	4.0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1.1	1.0	2.9	2.2	0.0	0.0	0.0	0.0	0.0	22.7	0.0	0.0	-	0.0	-	1.5
적합한 재활보조 기구가 없어서	5.1	6.5	9.5	10.8	0.0	0.0	0.0	0.0	0.0	0.0	0.0	0.0	-	0.0	-	6.7
기타	1.6	4.2	2.0	1.7	0.0	16.9	0.0	23.2	10.1	0.0	0.0	0.0	-	48.3	-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N)	(383)	(201)	(101)	(182)	(4)	(6)	(2)	(4)	(11)	(4)	(24)	(1)	-	(2)	-	(925)
전국추정수	146,250	77,430	40,027	70,499	1,594	2,496	772	1,477	4,099	1,532	9,124	365	-	958	-	356,535

주: 피해당 4,530건 및 무응답 11건 제외

2.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의 문제점

가. 법체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관리부실

- 현행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보장구의 품목은 총 77종류로 2005년 상위 보장구를 살펴보면, 보청기, 휠체어, 의지, 정형외과용 구두임. .
- 보청기와 휠체어의 경우 「의료기기법」 의하여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의지와 같은 기타 보장구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다름.
-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 감시가 가능하나 의족과 같은 보장구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신고제로 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상의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신고제를 취하고 있어 보장구의 가능,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보장구의 판매업소, 제조업소, 수입업소에 대한 현황 및 관리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 보장구는 질병의 치료·경감·처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품질 및 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장애인 환자가 짊어지게 되고 있음.

〈보장구 감시 단속 결과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장애인 보장구 단속결과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5년도에 경찰청과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72개 업소 중 4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13건, 고발 19건 및 행정처분·고발 병행하여 12건 적발되어 조치하였음.
- 안경렌즈 55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정점굴절력, 광학중심의 위치의 품질 결과, 5개 제품 부적합 판정되었음.
 - 5개 제품[국내 제조(rx) 4, 수입 1] 정점굴절력 부적합 판정
 - 시중유통품에 대한 자진회수 및 폐기명령 등('05.10.7)
 - 부적합 제품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내림.
- 안경렌즈 55개 제품에 대한 표시기재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표시기재 점검 결과, 40개 제품 부적합 판정함.
 - 제조일자 등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행정처분
- 2006년도 컬러 콘택트렌즈 19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하여
 - 18개업소 수거·검사결과 19개 제품 중 3개 부적합 판정함.
 -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 시중유통품에 대한 자진회수 및 폐기명령 등('06.4.24, '06.7.6)
 - 부적합 제품 제조 및 수입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내림.

- 컬러콘택트렌즈 19개 제품에 대한 표시기재 점검결과 18개 제품 적합판정.
- 표시기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 한국소비자보호원 장애인 보장구 민원현황은 2005년 8건 2006년 1월에서 6월까지 9건임.

• • 보장구 민원결과 • •

(단위; 건)

	2005	2006.1~6.
보청기	6	6
전동휠체어	1	1
목발	1	
환자용 침대		2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8.

나. 시장가격과 괴리 현상

- 2005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표를 고시하여 기준액을 설정하였으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특별한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장구 가격산정에 있어 기준액과는 달리 재료, 부품, 디자인 등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임.
- 보장구 지급절차상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고시 수가 아래로 질 낮은 보장구를 구입한 후 판매업자와 영수증을 조작하여 고시수가대로 제출하고 여분의 이익금액을 환자와 판매업자가 나눠가짐.

- 휠체어의 경우, 수가체계에서는 46만원을 기준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가격에서는 중국산 150,000원부터 4,000,000원 까지 가격차가 다양하며 option 에 따라 추가비용이 무한히 증가하고 있음.

• • 2005년 전동스쿠터 수입가 대비 판매가 비교 • •

한글품명	형명	수량	단위	금액(USD)	원가	판매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의료용스쿠터	hs-580	1,619	u	1,090	768,000	1,700,000	대세엠케어	TW
의료용스쿠터	L4	1	EA	934	956,416	2,400,000	메디타운	TW
의료용스쿠터	hs-360	329	u	189,175	588,800	1,400,000	대세엠케어	TW
의료용스쿠터	hs-890		u			2,950,000	대세엠케어	TW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8.

- 한편 「의료기기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된 장애인 보장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경우, 가격에 대한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마음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관세를 고스란히 장애인환자가 부담하게 됨.
-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고시기준 지급액은 1,336,000원이나 모두 대만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2005년도의 경우, 1,991건을 1,439,929달러를 주고 수입하였으며 최고가는 J업소의 1,116,000원이었고 최저가격은 J업소의 721,920원이었음. 그러나 의료용 스쿠터의 hs-360 품목의 경우 수입가는 588,800원이나 시중 판매가는 140,0000에 판매되고 있음.

- L4의 경우 원가는 956,000원이나 시중 판매가는 2,400,000원에 판매되고 있음. 이것은 수입가격에 대한 관세를 포함시켜 원가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장애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영세한 장애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 다리의지와 의족에 대한 시장조사를 살펴보면 넓적다리의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기준액은 2,270,000원으로 80%인 1,816,000원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현 시장가를 조사해 보면 서울 d업소의 경우 보통 3,000,000원이며 비싼 것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외제품과 국산품에 따라 기본적인 가격차가 발생하며 관절부품과 소켓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의족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기준액은 일반형 220,000원 실리콘형 720,000원으로 각각 80% 한도인 일반형 176,000원, 실리콘형 576,000원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시장가를 확인해보면 서울 D 판매업소의 경우 가장 많이 구입하는 의족이 1,800,000원이며 고가의 경우 6,000,000정도 하고 있음.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보면 크게 발, 아이스루스, 뼈대로 이루어지며 재료의 수입여부와 부품의 종류에 따라 몇 백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음.
- 대구 M 보조기업소의 경우, 실리콘 없는 의족임에도 보통 1,800,000원 의 가격을 이루고 있음. 충북 청주의c 보조기 업소의 경우 역시 1,800,000원대를 이루고 있음.
- 판매 혹은 수입품목에 대해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부재하여 체계적인

수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 동일한 장애인 보장구라 할지라도 판매업자가 부르는게 값으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보장구에 대한 정보와 기준근거 없이 판매업자가 부르는 가격에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야만 하는 실정임.

- 의지, 보조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장애인 보장구 가격의 불균형은 영세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이며 심지어 보험급여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장애인 보장구 제도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밖에 없음.
- 장애인 보장구의 가격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의 구성이 필요하며 시장가격에 맞추어 일관된 공통된 기준에 맞는 가격 형성이 필요함.
- 2005년 한해 수입한 휠체어가격을 비교해보면, 가장 비싼 휠체어는 pro4630으로 원가가 10,776,282원이며 제일 저렴한 것은 hand wheelchair 로 51,882원으로 무려 207배나 차이나고 있음. 한편 휠체어 기준액은 480,000원으로 공단에서 80%를 부담해 주고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의 휠체어 구입에 대한 지원금액은 384,000원임. 그러나 수입한 휠체어 가격 대비를 볼 때 평균가격은 지원금액의 10배가 넘는 5,362,200원임.

• • 2005년 휠체어 수입가 대비 판매가 비교 • •

형명	단가	원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Supertrans RR04630	10,534	10,776,282	(주)통일의료기	US
Rabbit RR30630	9,596	9,825,963	미키코리아(주)	CN
B 600	4,346	4,450,202	대양의료기	CN
S525 Power wheelchair	4,072	4,170,116	다우메디칼	CH
LCE	3,642	3,729,408	(주)메디타운	CN
V-521 Power Wheelchair	3,311	3,390,464	(주)메디타운	CN
torque	3,178	3,254,272	(주)메디타운	CN
B 500	2,367	2,423,768	(주)메디타운	CN
NUTRONR51LXP	2,275	2,329,600	(주)통일의료기	CN
Switch attack	2,265	2,319,360	(주)메디타운	TW
ProVario	2,025	2,073,984	다우메디칼	US
HE20850000	1,950	1,996,800	(주)메디타운	TW
TP03	1,950	1,996,800	(주)통일의료기	TW
ZZR 외	1,864	1,908,605	다우메디칼	US
Quickie Ti Titanium	1,686	1,726,036	(주)통일의료기	US
TP03	1,654	1,693,989	(주)통일의료기	US
A 200	1,648	1,687,665	(주)통일의료기	US
HE20850000	1,642	1,681,184	(주)통일의료기	US
nutron r51xp	1,616	1,654,400	(주)리컴메디칼	JP
Quickie R2	1,597	1,635,328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mambo 542	1,570	1,607,913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tp04	1,401	1,434,329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nutron r51xp	1,399	1,432,576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Voyager	1,379	1,412,242	다우메디칼	US
Switch	1,281	1,311,744	(주)메디타운	TW
MVP	1,149	1,176,064	(주)메디타운	TW
TP02	1,076	1,101,824	(주)메디타운	TW
mambo 313	1,051	1,076,495	(주)메디타운	TW
Avantgarde	1,016	1,040,865	(주)메디타운	TW
a-4	1,011	1,034,752	(주)메디타운	TW
tp01	1,008	1,032,407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HE90000010	580	593,920	(주)메디타운	TW
action patriot	490	501,760	(주)메디타운	TW
Start	469	479,910	(주)메디타운	TW
9000 xt full recliner	462	473,088	(주)메디타운	TW
tc03	315	322,560	(주)통일의료기	DE
he9512974e	250	256,000	(주)통일의료기	US
he8500203u	182	186,854	(주)통일의료기	US
km-8520q24	174	177,845	다우메디칼	US
e8702230c	142	145,918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he8665830c	97	99,323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he8685831c	86	88,110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CN
miso-1	85	87,040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fs809	60	61,658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hand wheelchair	51	51,882	(주)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DE

□ 보청기의 수입가 대비 원가비료를 보면 수입가 최고가는 1,636,864원인 반면 최저가는 51,882원으로 약 300배가 차이나고 있음.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272,000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 2005년도 보청기 수입가대비 원가 비교 • •

형명	단가	원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BAHA Cordelle II (beige,black, grey)	1,599	1,636,864	(주)광우메딕스	DK
adapto compact power	849	869,069	(주)광우메딕스	DK
perseo 311 daz forte	778	796,672	(주)광우메딕스	DK
Savia 311 dSZ Forte	766	784,725	(주)광우메딕스	DK
c75d	737	754,688	(주)광우메딕스	DK
oticon syncro btepd vc	646	661,555	(주)광우메딕스	DK
LIAISON P	640	655,701	(주)스타키코리아	ES
e56	598	612,352	(주)스타키코리아	US
Canta Power BTE 780-D	596	610,304	(주)스타키코리아	US
Siemens Acuris P Hearing Aids	576	589,312	(주)스타키코리아	US
gaia bte power	568	581,666	(주)스타키코리아	US
CANTA 770D	541	553,984	(주)스타키코리아	US
CONVERSA.NT MODA	540	553,460	(주)스타키코리아	US
ReSoundAIR 60	512	524,288	(주)스타키코리아	AT
Triano S	509	521,472	(주)스타키코리아	US
CANTA 470	504	516,437	(주)스타키코리아	US
senso p38vc	496	507,494	(주)스타키코리아	US
SIGNIA	481	492,885	(주)스타키코리아	US
Valeo 311 Forte	480	491,315	(주)스타키코리아	US
Canta 470-D	472	483,328	(주)스타키코리아	AT
O75D	471	482,743	(주)스타키코리아	US
Air 60	465	476,160	(주)스타키코리아	US
Valeo 211	457	467,558	(주)스타키코리아	US
E65	448	458,752	(주)스타키코리아	US
UNISON 6 HP	425	435,200	(주)스타키코리아	US
Triano SP	417	426,729	(주)스타키코리아	US
sumo dm	410	419,362	(주)스타키코리아	US
PRISMA 2P	397	406,357	(주)스타키코리아	US
savia 311 dSZ Forte	389	398,336	(주)스타키코리아	US
c18	385	394,445	(주)스타키코리아	US
supero 412	354	362,598	한음상사	DK
UNISON 2P	330	337,920	한음상사	DK

형명	단가	원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PRISMA 2	327	334,708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UNISON 3 P	322	329,956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sumo xp	310	317,636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Tego BTEPD VC	308	315,857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Triano 3	305	312,640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380p	303	310,409	한음상사	JP
MX70-DVI	298	305,152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powermaxx 411	292	299,008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UNISON ESSENTIAL P	286	292,352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F229D	283	289,748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Supero 411	281	287,325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M75	280	286,720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AMICO	274	280,430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F228D	270	276,022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Canta 270	267	273,457	유니트론히어링코리아(주)	CA
Tego Pro BTEPD VC	264	270,206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US 80-PP	260	266,240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TARGA 3P	254	260,267	한음상사	TW
swift 120+	247	253,065	(주)태양칼라	SG
audioflex 120	244	250,266	(주)태양칼라	SG
TARGA 3	242	248,087	(주)광우메딕스	DK
022 bravo high-power bie series b32	235	240,811	(주)광우메딕스	DK
Discover Plus Family BTE	222	227,575	(주)광우메딕스	IT
Discover Plus family BTE	219	224,256	(주)광우메딕스	DK
supero 411	205	210,373	(주)광우메딕스	DK
Go p	201	206,210	(주)광우메딕스	DK
143 PPV	200	204,847	(주)광우메딕스	DK
021 bravo power bie series b12	200	204,589	(주)광우메딕스	DK
Super-Front PP-C-L-4+	197	201,933	(주)광우메딕스	SE
143 PPV	195	199,680	복음의료기(회원)	CH
155pp agci	190	194,560	(주)한국보청기	TW
audioflex 100	190	194,150	(주)한국보청기	TW
107-2 pp agci	181	185,344	삼미음향기술(주)	DE
A74 BTE	180	184,320	삼미음향기술(주)	DE
155 AMPLIUS	176	180,224	복음의료기(회원)	CH
A675 SEQUEL AV	175	179,273	복음의료기(회원)	CH
E2-P	174	178,176	와이텍스코리아(주)	DK
Discover V Family BTE	171	175,538	복음의료기(회원)	CH
777pp	170	174,080	복음의료기(회원)	CH
UM 60-PP	165	168,960	복음의료기(회원)	CH

형명	단가	원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S71-O	165	168,960	복음의료기(회원)	CH
MAXX 311 Forte	162	166,298	복음의료기(회원)	CH
011 bravo bie series b2	160	163,780	(주)우리난청센터	DK
TARGA 1P	160	163,421	복음의료기(회원)	CH
021 BRAVO POWER BIE SERIES B11	153	156,672	복음의료기(회원)	CH
swift70+	150	153,156	(주)한국보청기	SG
ARENA 2P	148	151,552	(주)한국보청기	SG
MAXX 211	147	150,528	삼미음향기술(주)	DE
A675 SEQUEL	142	145,408	삼미음향기술(주)	DE
BREEZE	140	143,360	와이텍스코리아(주)	DK
STARKEY DAVINCI PxP	138	141,309	와이텍스코리아(주)	DK
cb65	138	140,834	와이텍스코리아(주)	DK
Opus2 BTE Super Power	136	139,438	와이텍스코리아(주)	DK
h70 super d	135	137,912	와이텍스코리아(주)	DK
Opus2 BTE Mini	132	134,656	삼미음향기술(주)	DE
011 BRAVO BIE SERIES B1	131	134,057	(주)우리난청센터	DK
Classica AGC	129	132,301	(주)우리난청센터	DK
UM-60	129	132,096	(주)우리난청센터	DK
777 PP3	127	129,707	(주)우리난청센터	DK
classica AGC	126	128,922	(주)우리난청센터	DK
775PP III	120	122,554	(주)한국보청기	SG
Siemens Infiniti Pro SP BTE	118	120,832	(주)우리난청센터	DK
S13 ARISTA MM	118	120,608	(주)우리난청센터	DK
STARKEY DAVINCI PsP	117	119,808	(주)우리난청센터	DK
S71-O	116	118,784	복음의료기(회원)	CH
Picoforte3 PP-C-P	113	115,814	복음의료기(회원)	CH
h31 +agc	109	111,534	복음의료기(회원)	CH
h33 +pp	109	111,534	복음의료기(회원)	CH
Solo T+ 411 dSC	108	110,967	복음의료기(회원)	CH
Solo T+ 411 dLim	108	110,967	복음의료기(회원)	CH
HA Infiniti Pro BG	105	107,531	복음의료기(회원)	CH
HI-70	104	106,906	복음의료기(회원)	CH
A675 TSP	104	106,429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J13 SEQUEL II MM	99	100,966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Picoforte3 PP-C-L-P	97	99,226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Solo T+ 311 dWDR	93	95,078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digitrim	92	94,523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J13 ENDEARVOUR MM	91	92,708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M34	87	89,088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형명	단가	원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284 PP-AGC-I+	84	86,174	(주)우리난청센터	DK
STARKEY ASPECT XTRA	84	86,016	(주)우리난청센터	FO
284 PP+	84	85,675	(주)우리난청센터	DK
A13 HDP	83	85,072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J13 AXENT MM	82	83,934	(주)지엔리사운드코리아	DK
Phoenix 113	81	82,712	(주)우리난청센터	DK
Phoenix 313	81	82,577	한음상사	TW
A13 HDP SUPER	80	82,319	한음상사	TW
Phoenix 213	80	82,140	한음상사	AU
h21 nh	78	79,749	한음상사	AU
INSERTINA GENESIS	76	77,737	와이텍스코리아(주)	DE
am 260pp	75	77,101	와이텍스코리아(주)	DE
Spectra PP+	71	72,875	와이텍스코리아(주)	DE
STARKEY DX AGC H	70	71,674	와이텍스코리아(주)	DK
STARKEY ASPECT	70	71,638	와이텍스코리아(주)	SG
RETROX	61	62,720	와이텍스코리아(주)	SG
252A	57	58,552	와이텍스코리아(주)	SG
integra71	55	56,709	(주)리치테크	DE
integra72	55	55,945	(주)리치테크	DE
AudioServiceOmega956LABehind-the-EarHearing Aids	53	54,129	(주)리치테크	DE
INSERTINA	53	53,897	(주)리치테크	DE
F80 HT+	52	53,356	(주)오디나코리아	SG
HB-23PT	50	51,252	(주)우리난청센터	DK
rexton fusion pp+	47	48,589	(주)우리난청센터	DK
SPECTRA PP+	47	48,189	(주)우리난청센터	DK
B13 AGC	47	47,968	(주)우리난청센터	DK
B13 AGC H	47	47,889	복음의료기(회원)	CH
B13 PC	47	47,750	복음의료기(회원)	CH
integra70	46	47,087	복음의료기(회원)	CH
am 34	46	46,918	복음의료기(회원)	CH
278P	46	46,712	복음의료기(회원)	CH
B13	45	46,180	복음의료기(회원)	CH
AM 18	44	44,684	복음의료기(회원)	CH
hb 23p	41	42,142	복음의료기(회원)	CH
HB-23P	39	39,947	복음의료기(회원)	CH
SPECTRA PP+	38	38,874	복음의료기(회원)	CH
178 PP-AO	28	28,472	복음의료기(회원)	CH
176 AO	28	28,308	복음의료기(회원)	CH
172 N	25	25,233	씨멘스(주)	SG

형명	단가	원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Fision PP+	24	24,113	씨멘스(주)	SG
HA 20DX	20	20,777	씨멘스(주)	SG
HA-20DX	20	20,557	씨멘스(주)	SG
PHOENIX 103	19	19,456	씨멘스(주)	SG
PHOENIX 303	19	19,456	씨멘스(주)	SG
Fision	19	19,165	씨멘스(주)	SG
audifon allegro s+	5	5,120	씨멘스(주)	SG
audifon allegro x	5	5,120	씨멘스(주)	SG
audifon aureus s+	5	5,120	씨멘스(주)	SG
audifon aureus x	5	5,120	씨멘스(주)	SG

자료: 「2005년 전동스쿠터 수입가 대비 판매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8.

- 보청기의 경우, 2005년도 수입가중 가장 저렴한 것과 고가의 보청기의 가격차는 원가로 K사의 보청기 1,636,864원과 S사의 보청기 5,120원으로 차이가 319배나 됨. 현재 보청기의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은 272,000원임. 시장조사결과 판매가로 알아보면 K사의 보청기 1,636,000원은 6,000,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S사의 19,456원의 보청기의 경우 시중가로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판매되고 있음.

• • 2005년 인공후두 수입가 대비 원가비교 • •

형명	수량	금액(USD)	원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7208	1,252	11,917	9746	(주)신스메디텍	S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8.

- 2005년도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수입가 대비 원가를 비교해보면 가장 비싼것은 92,667원이며 가장 저렴한 것은 30원으로 무려3000배나 차이나고 있음.

• • 2005년 소프트 콘택즈렌즈 수입가 대비 원가비교 • •

형명	수량	금액(USD)	원가	수입업소명	제조국
chromagen contact lens	400	36,198	92,667	범산통상	GB
PLENO TORIC	20	416	21,299	(주)우전메디칼	JP
PLENO	400	3,030	7,757	(주)우전메디칼	JP
bausch and lombsofspin (polymacon)visibility tinted contact lens	30	129	4,403	(주)바슈롬코리아	IE
global soft (circle optimizer)	1,300	4,117	3,243	명동콘택트렌즈	TW
GLOBAL SOFT(CIRCLE OPTIMIZER)	1,704	5,005	3,008	명동콘택트렌즈	TW
SofLens Multifocal (polymacon) visibility Tinted ContactLenses	1,545	2,976	1,972	(주)바슈롬코리아	US
optima fw	44	47	1,094	(주)바슈롬코리아	US
complete aquavision	1,302	1,302	1,024	에이엠오아시아리미티드	IE
Clearlab	569	9	664	(주)사이넥스	SG
Clearlab Clear 58 Etafilcon A Soft Spherical Contact Lens for Daily Wear	569	369	664	(주)사이넥스	SG
Clearlab Clear All-day Hioxylcon A Soft(Hydrophillic) Spherical Lens	569	369	664	(주)사이넥스	SG
SOFLENS COMFORT (HILAFILCON B) VISIBILITY TINTED CONTACT LENSES(BLUE C OLOR)	754,390	410,242	557	(주)바슈롬코리아	GB
1-Day ACUVUE MOIST Brand contact Lenses (Etafilcon A) Visibility Tinted with UV Blocker	540	16	30	(주)한국존슨앤드존슨	US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8.

다. 지급제도의 단순화된 품목 분류¹⁰⁾

- 현행 장애인 보장구 분류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특성 등을 고려한 처방-검수가 불가능하고 수리 임대 등 각종 재활보장기구의 제품운영에 맞는 제도운영이 불가피한 상태임.
-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일반 원칙에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환자의 건강상태와 재활의 효과를 위한 몸의 일부분과도 같은 장애인보장구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장애인환자의 건강권을 최선으로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장애인의 보장구가 맞춤형식을 강조하다보니 보조기사의 재량에 따라 재료와 기술수준이 달라 다양한 option으로 인한 가격 급상승. 이러한 양태는 장애인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악덕 판매업자의 횡행할 가능성이 높음.
-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특성 및 신체조건, 성별, 나이, 질병, 생활 스타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의사의 처방 등을 통해 진정 재활치료가 가능한 기능적으로 효과 있는 보장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10)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라. 판매업소의 양극화

-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보장구는 중국·대만 등 수입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보장구 가격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비용 부담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보장구등 재활보조기구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과 같은 의료산업과 유사하게 높은 유통마진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품질관리 등 유통과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산업 및 시장의 영세성, 사회의 관심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아직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현재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1차적으로 의사의 처방으로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게 되는데 몇몇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소가 병원에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고 리베이트를 통하여 보장구 사업을 독점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장애인 보장구 판매업소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영세한 보장구 판매업소의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중국산등 질 낮은 보장구를 제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마. 지급절차의 관리 부실.

- 현행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보장구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보장구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 지급신청(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구입비용 지급(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지급 절차를 살펴보면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 진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함. 이때 판매업자는 복지부 수가 기준액에 맞게 보장구를 제조하여 주며 보장구를 구입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진료기관에 보장구 검수를 받게 됨. 이후 검수확인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 군, 구청에 구입비용을 신청함. 이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구입비용을 지급하게 됨.
- 현 지급절차로는 수급자격 적정성에 대한 사전점검이 부재하며, 수급받은 보장구의 불사용 및 재판매 등으로 부적절한 지원사례 발생함.
- 현재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상 주소이전으로 인한 중복신청으로 중복수급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3. 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가. 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¹¹⁾

- 미국의 장애인 보장구는 대분류 10종, 중분류 71종, 소분류 494종에 이르고 있음.
- 첫째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업재활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한 공적 급여제도이며 둘째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적 급여제도임.
-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제도는 급여대상과 급여 품목, 급여 액수 등에서 다른 보장구 급여제도를 압도하고 있음.
- 메디케어(medicare)
미국의 연방보험 프로그램으로 전체 재활보조기구 지급의 약8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수혜자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만성신장장애자를 포함하고 있음.
- 메디케어의 운영은 정기건강진단, 안경, 처방약, 또한 자택 및 요양소에서의 장기케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급여의 청구는 의사 및 간호사 기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함.

11)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p45

□ 보장구 지급품목

메디케어의 보장구 급여품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첫째,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주로 의료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질병 또는 부상을 입지 않는 상황에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넷째,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적절해야 하고 다섯째,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거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애인보장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1. 의료용 재활보조기구 종류: 휠체어, 혈당 측정기등
2. 보조기구 종류: 저시력용 보조기, 인공가슴, 인공후두
3. 의지 보조기 종류: 의지, 보조기,의안
4. 기타 보조기구 종류; 정형외과용 당뇨구두등

□ 메디케어의 급여 내용

메디케어의 보장구 급여는 의사의 주문 및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을 증명하는 CMN (certificate of medical necessity)이 요구됨. 해당 급여 품목에 한하여 실제가격과 메디케어 수가를 비교하여 볼 때 그 중 낮은 금액의 80%를 메디케어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메디케어의 보장구 급여방식은 임대가 원칙이며 월 단위로 하여 최장 기간 15개월까지 가능하며 월 임대비는 최초 3개월까지 상한액의 10%이고 3개월 이후에는 상한액의 7.5%로 책정되고 있음.

□ 보장구 수가결정의 방식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수가는 품고의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하고 있음.

1. 수가: 저가 품목, 빈번하고 상당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 기타의지 보조기, 상한액 임대품목, 산소 및 산소용구, 음식섭취 보조기구로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것임.
2. 합리적인 금액: 특정 투석장치와 용구, 그리고 정형외과용 신발에 적용함.
3. 약품가격:DMERC로 청구되는 면역요법 및 약품에 적용됨.

재활보조기구에서 지급되는 품목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수리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태만에서 비롯되지 않은 분실이나 혹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인 경우에만 수리비 급여를 지급함.

□ 메디케어의 급여지급 절차

보장구 급여의 서비스 공급자는 보장구의 처방 및 테스트, 보장구관련 약품 처방 등을 담당하는 의사와 보장구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서비스 공급기관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수가체계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비공급기관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수가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메디케어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20%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됨.

□ 메디케어의 공급자 등록

메디케어에 공급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NSC(national supplier clearinghouse:국가공급정산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보험급여에 대해 재활보조기구 지역중간 지불기관에 청구신청을

해야 함. 판매업자는 국가공급정산소를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NSC는 미국내 모든 공급자 파일을 관리하고 청구번호를 발행하며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DMERC에 국가공급자 파일을 공개함. 공급자는 재활보조기구의 지속적인 등록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3년 마다 메디케어에 재등록해야 함.

나. 일본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¹²⁾

- 일본의 재활보장구 급여제도는 의료제도 및 사회복지제도안에서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첫째, 보험재정에 의해 급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체계와 세법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신체장애자 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이 있음.
- 개호보험법에 의해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운영주체는 각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되고 40세 이상 국민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며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시정촌이 인정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개호서비스는 크게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데 재택서비스는 복지용구대여 서비스가 포함되며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이용자는 임대요금의 10%를 부담함으로써 도부현지사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복지용구를 직접 임차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자로부터 나머지 요금의 90%를 지불받게 됨.

12)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p75

□ 지급품목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의료사회복지, 국가부조, 공중위생 등 크게 4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범위, 지급방법, 대상자에 따라 지급되는 보장구나 일상생활용품은 다르나 제도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의 대부분은 「신체장애자복지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교부기준에 준하고 있음.

1. 의지: 쇼케트, 동력전달계, 외장 등 의지의 모든 부분이 오랜시간 사용해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의자
2. 훈련용 의지: 정착해서 동작을 하기위해 본 의지를 제작하기 전에 실험 또는 검토 가능하도록 동력전달부와 훈련용 임시 쇼케트를 조합시킨 의지
3. 의료용 장구: 의학적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하는 장구, 또는 단순히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구.
4. 재활용 장구: 의학적 치료가 끝나고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고정된 후에 일상생활의 동작 등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구.
5. 일상생활용품: 신체기능이 저하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사용하는 용품.
(예, 리프트, 특수침대, 체위전환기, 입욕 보용구, 변기, 복지전화등)
6. 기타; 수노기, 스토마 용구, 보행보조기

□ 일본의 보장구 급여체계

현재 일본에서는 의지장비의 처방에서 제작, 적합, 장착 훈련에 이르기까지 한 시스템으로 행해지고 있어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쉽게 지급받을 수 있음. 환자는 각종의 제도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보장구의 급여를 위해서 어느 것을 이용하면 좋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환자가 치료중인 경우와,

치료는 완료했으나 장애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치료중인 경우는, 의료의 일환으로서 보장구가 처방되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장착되게끔 하며 이 경우 장비를 치료용 장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지를 훈련용 임시의지로 칭함. 여기에서 적용되는 급여제도는 보험체계의 제도가 중심이 되며 산업재해로 인정된 재해라면 산재보험이 제일 우선순위로 적용되고 이외에는 환자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 보험제도로 치료 및 보장구의 지급이 시행됨. 이러한 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생활이 곤궁하여 보험료 지불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 중 공적부조로서 「생활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음.

- 치료를 완료한 후에도 장애가 남아 의지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갱생용의지, 갱생용 장비로서 각 제도의 지급대상자라면 의지장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각 제도의 우선순위로는 산재보험이 최우선이며 다음으로는 연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신체장애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음.

□ 의료보험제도

국민의 질환과 사고치료에 대해 상호부조에 기초를 둔 국민 개보험제도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 또는 사고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스템임.

□ 노동재해보험제도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행하는 제도로 피고용인의 무재해, 공무재해에 대하여 고용인이 책임이 있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이나 복지제도에 우선함.

관할의 노동 감독서가 재해라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재해보험제도의 종류에는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공무원 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 학교 건강센터제도가 있음. 보장구의 급여제도는 치료단계에서 보장구가 지급되는 의료보험제도와 동일하고 치료용 장구나 훈련용 가의지 급여방식도 용역비 지불 방식과 비슷함. 의료보험제도와 다른점은 수급기관이 노동기준감독서라는 것임. 근로재해보험제도에서는 개인 부담이 없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노동재해보험제도는 업무재해와 통근재해를 보험급부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업무상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손실된 상병노동자의 회복 및 손실의 보전과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후생연금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피보험자에게 후생연금보험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자부담 없이 보장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 후생연금보험은 노동자가 노령, 폐질, 사망 등에 처해 있을 때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는 공적급부 시스템으로 그 재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의해 조달되며 지급받는 장애인의 거주지가 시의 경우에는 국1/2 + 시1/2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2/4 + 현1/4 + 지방자치단체 1/4로 이루어짐. 또한 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전년도 소득상태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있음.

□ 전상병자특별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지급제도

전상병자 특별보호법은 전신병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정신에 기본적인 원호

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장구의 지급이 있음. 보장구의 지급은 전액 국고부담이므로 본인부담 없는 것이 특징이며 보장구 지급절차는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준함.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의 생활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능력, 그 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활용하여 최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는 치료용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험변경 신청서에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관할 복지 사무소에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에 치료용 장비를 지급받음. 또한 치료가 끝난 후의 장애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자복지법 등의 복지제도가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음.

□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의 품목으로는 보조장비와 같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품목(휠체어, 보행기, 보행지팡이)은 개호보험의 보험금부로서 지급되고 있음. 일상생활용구에 대해서는 장애의 상황에 따라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호보험의 보험금부 대상이 되는 품목은 개호보험으로부터 대어나 구입비를 위한 지급이 실행됨. 개호보험의 복지용구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용구 금부 등의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지급이 실행되고 있음.

4.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가. 장애인 보장구의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현재 법체계상에 이분화 되어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보장구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함.
 - 현재, 장애인복지사업법에 의해 신고제로 되어 있는 의족을 기타 다른 보장구와 같이 허가제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담당기관의 설치를 통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또는 판매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관리하며 제조업소, 판매업소, 수입업소등 보장구 판매업자들의 등록 감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함. 한편, 재활공학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보장구에 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이와 아울러 고시품목 확대, 그리고 시장의 가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보장구 수가에 대한 관리 및 기준액 설정 등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 관리 체계 강화¹³⁾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77종류의 품목에만 수가체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보장구라 하더라도 재질과 기능에 따라 혹은 체형에 따라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세밀한 보장구를 맞추어야 함.

13)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국립건강보험공단, 2005, p91 일부 발췌 및 정리

- 거의 2400여종 되는 완성품, 부품에 대해 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메디케어 지급제도처럼 좀더 구체적으로 코드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극히 단순화된 품목분류법은 비용관리 업무차원에서는 유리하나 개인의 특성이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의 고유 특성에서 볼 때에는 의학적 효과성은 물론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것은 저급한 제품을 제공하고도 반대로 높은 이윤을 취하고 있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 장애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재활보조기구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품목 분류법 채택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나이, 직업, 생활양식, 장애부위의 상태, 잔존기능,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장애인 보조구가 전문의사에 의해서 처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장애인 보장구는 제품의 특성상 여타 공산 제품과 달리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증진 및 의료적 목적의 달성이 중요하며 장애에 대한 개별성과 더불어 처방 등의 과정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임. 예를 들면, 활동성보다 안전성이 처방의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며 근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에는 고기능 무릎관절이 오히려 부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임.
-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보다 더 세분화된 품목 다양화가 요구되며 합병증 등 상병상태에 대한 적절한 처치와 의사의 계획된 치료목적에 부합되는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의 전문성과 처방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미국에 경우 2만5,000가지 이상의 보장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한 품목세분화 및 코드화의 제도 도입은 최소비용의 최대효과의 정신에 기인하고 있음. 즉 현행의 일정 제품군에 대한 평균가격의 수가 산정에 근거한 급여품목에서는 일부 부도덕한 공급자가 있다면 보험수가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도 높은 이윤을 취하거나 치료나 재활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고가 고기능의 제품을 권장하여 환자에게 높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부도덕한 판매업자가 수요자와 거래하여 싸고 질이 안좋은 보장구를 판매하여 수가의 이익금액을 챙기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과잉 처방이나 허위청구 등 보험급여의 누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내 장애인 보장구의 유통체계의 정상화 및 산업발전에 오히려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장애정도와 치료목적에 따라 의사의 전문성에 입각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현행 단순 급여품목의 분류 및 수가체계를 개선해야만 하며 수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시가격의 산출 방법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등 체계적 방안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다. 급여방식의 다양화

- 기술이 발전하고 첨단제품이 계속 개발되면서 제품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보장구 구입비용만을 지급하는 현행보험방식을 다양화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메디케어와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이 내구성이 있으며 공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경우, 신제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규격화된 일부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임대-대여 급여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 이러한 재활보조기구의 급여방식을 다양화는 고가의 보장구를 구입해야 하는 영세 장애인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효율적 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라. 지정업체 계약제도 도입

-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업소를 천편일률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음.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품질관리와 유통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유통특성과 품질관리 형태를 고려한 업체 선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지, 보조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업에 의하여 의지, 보조기 기사의 의무 채용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의지보조기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도 속하지 않아 사실상 국가의 어떠한 품질관리 기준에서도 빠져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한편 병원과 보장구업소의 불공정한 유착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면을 감안할 때 의지 보조기의 품질 및 유통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땅의 장애인들이여 밖으로 나오라.



참 고 문 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 2005. 5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2005
- 대한재활의학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 정책심포지엄 자료집:고령화 사회와 의료재활, 2006
-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5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방안」, 200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활의료서비스 민간확대를 위한 민간보건자원 참여 활용화 방안」, 2003